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20년도



목 차

1.	공통1
•	금융정책 일반 3
•	금융소비자 3
•	자금세탁방지 관련92
•	기타(공동소관)14
2.	은행5
3.	보험
4.	중소 9
•	여신전문금융업
•	상호저축은행업 ······1B
5.	자본시장 19
6.	금융혁신11
•	전자금융 145
•	신용정보
7.	기타("금융규제민원포털" 미등재) 207

공통

금융정책 일반

법령해석 회신문(190017)

법령해석 회신문(190147)

질의 요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동(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 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성과관리, ⑤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보험계약 정보(보험료 수남정보(미입금, 연체), 계약 실효 여부 등)를 제공하는 것은은행이 고객과 질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담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상기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211)

질의 요지	□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하 '지배 구조법')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지배구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인사・회계・법무・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유	□ 지배구조법에서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은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인사・회계・법무・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76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① 및 77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② 참조)

76 위험관리책임자 겸직① (법 제28조)

- ◇ 위험관리책임자가 해당 금융회사내의 겸직금지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인사, 총무, 법무 등 업무 수행 가능여부
-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않는 업무는 겸직할 수 있습니다.
- □ 법 제28조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금 지 업무(자산운용,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업무 · 그 부수업무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o 인사, 총무, 법무 등의 업무는 법 상 겸직이 제한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만큼,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o 다만,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조문 >

- 법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 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영 제24조(겸직 금지 등)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 1. 위험관리책임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 2. 준법감시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 · 관리 업무

77 위험관리책임자 겸직② (법 제29조)

- ◇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본질적 업무에 심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라고 하더라도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이 가능합니다.
- □ 본질적 업무 등이라 하더라도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지배구 조법 §28①)
- o 예를 들어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나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 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
- □ 다만, 위험관리책임자가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부서를 직접 관장하거나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최 종적인 집행권한을 갖는 것은 위험관리 업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 상세한 업무허용 범위는 별첨한 예시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문 >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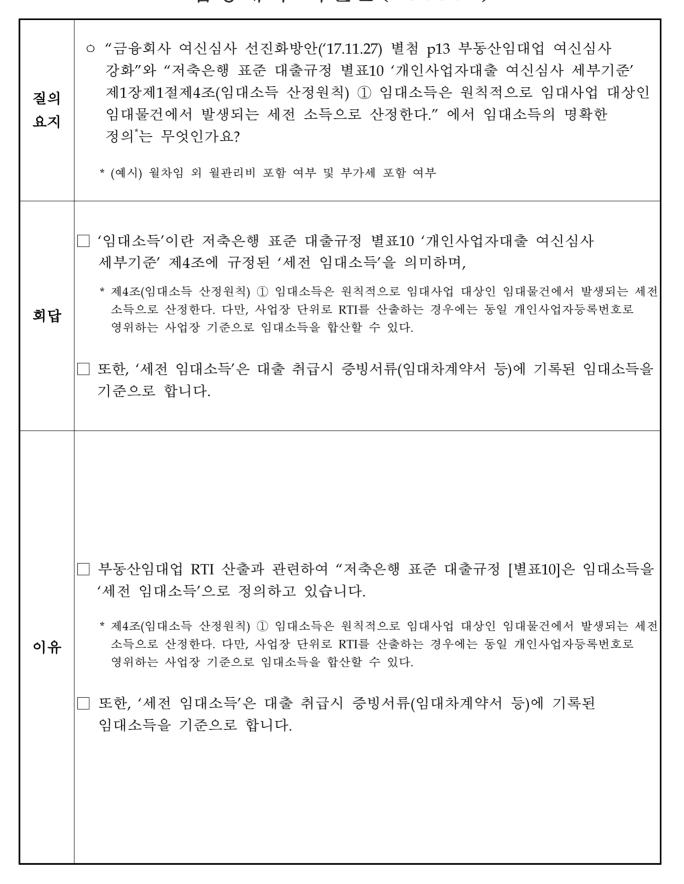
법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법령해석 회신문(190241)

질의 요지	□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할 경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보고 대상이되는지 여부
회답	□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	 □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근 임 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배구조법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11조에 따라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 그리고, 지배구조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9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 직보고 대상이 됩니다.(법령해석 회신문 180058 참조)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아닌 점,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겸직하는 회사가 비금융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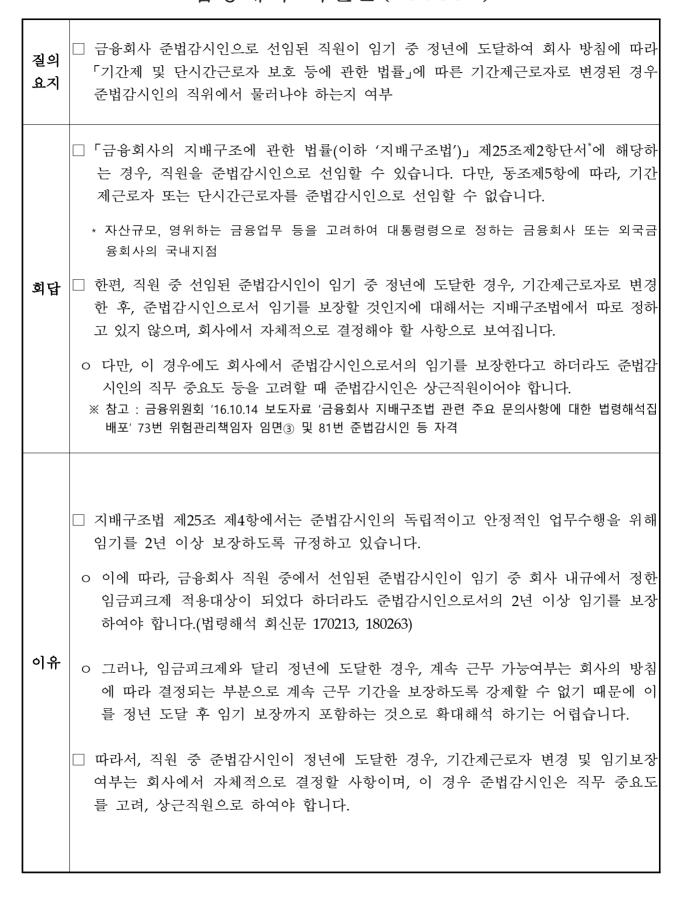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190347)

질의 요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격요 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며, 해당 금융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 고하여야 합니다.
	□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일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제외)
	o 이와 관련,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위험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최근 5년간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 다.
이유	- 또한,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②금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 ③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됨)
	 한편, 지배구조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감독규정 제14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법에서 정한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심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사안에서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한편, 지배구조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감독규정 제14조, 감독규정 시행세 칙 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법에서 정한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 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69)

질의 요지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 사후관리 업무(채권관리, 채권추심 등)가「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29조에서 정한 준법감사인 겸직 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이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29조 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이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준법감시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 또는 여신 사후관리 업무 등 여신관리와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법령해석 회신문 190065 참조)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여신 사후관리(채권관리, 채권추심 등) 업무는 여신심사를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채권의 사후관리 업무로서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인 만큼 이해상층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81)



법령해석 회신문(190386)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관 련하여 대주주의 친인척*이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항 에 대해 질의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에 해당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변경 질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③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내국인)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보유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시행령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 회답 가. 금융회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 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주 1) 금융투자업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 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온라 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원(「상 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2)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 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온라 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원인 주주로서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 나.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금융지 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 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 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 기존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과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
- ③ 미성년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미성년자가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배구 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야 하며,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미성년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외국인이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주식취득 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지배구조법상 대주주란 ①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최대주주),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를 말합니다.(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이유

- o 한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 일정한 범위의 친인척 등과, 이러한 친인척 등과 합하여 30%이상 출자하거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및 그 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o 이와 같은 특수관계인 규정은 본인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의 경우 본인 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 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5호에서는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최대주 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경우 대주주 변경심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o 이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고자하는 경우, 기존 보유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미만인 경우에는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 o 기존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과거 대주 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5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지배구조법은 미성년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내국인)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o 다만, 미성년자가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배 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미성년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o 만일,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되었으나,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1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④ 지배구조법은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 다.
- o 다만, 외국인이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주식취 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 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o 만일,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되었으나,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1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93)

질의 요지	□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관계를 맺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상대 회사들과 유사하게 전무, 상무, 이사 등의 호칭을 사용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에 따른 임원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관계를 맺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해당 호칭과 업무집행 권한의 부여와는 관계가 없으며, 또한 급여를 포함하여 인사상의 어떤 변화도 없음
희답	□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은 지배구조법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배구조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대표·부대표·전무·상무·이사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유	 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배구조법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집행책임자란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대표、부대표、전무、상무、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업무집행책임자의 의미① 참조)
	□ 질의하신 사안에서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은 지배구조법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자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o 한편, 업무집행책임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을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회사 내부적인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75)

질의 요지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2조 제3호 괄호에 기술된 단서 문구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의 범위
회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규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의 범위는 지배구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규(이하 '지배구조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지배구조법 제2조 제1호에서 지배구조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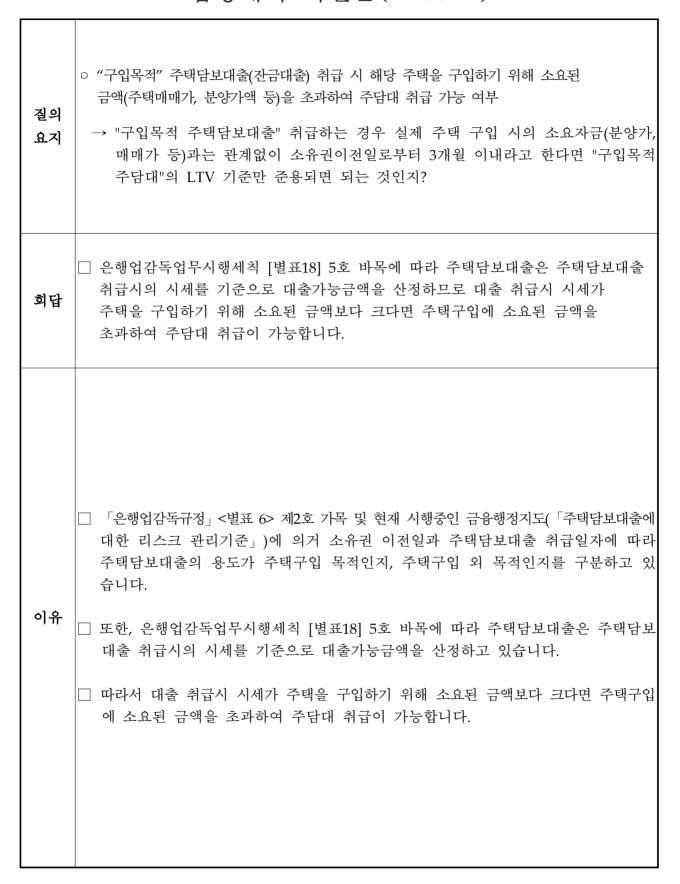
□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을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 귀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사실상 지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알려드림
1 (제1호) 귀사는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② (제2호) 우선 법 문언상 '주식의 분산도'를 지배관계 형성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금산법상 숭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
지배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지배'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사실상사업내용 지배'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판단기준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에 따라 <u>사안의 경우 귀사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승인</u>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사는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1호 차목,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2) 다른 회사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3)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분의 5 이상(11.8%)을 소유하게되므로 4) 귀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을 ' 사실상 지배'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o 귀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와 관련해서는 금산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우선,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귀사는 투자자들 중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법 문언상 '주식의 분산도'를 지배관계 형성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
 지배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지배'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사실상 사업 내용 지배'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판단기준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귀사의 경우, 1) 의결권 있는 주식 30%이상 소유 또는 최다출자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정관·주주간계약서 상 귀사가 이사 임면, 이사회 의결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요 주주와 계약 또는 합의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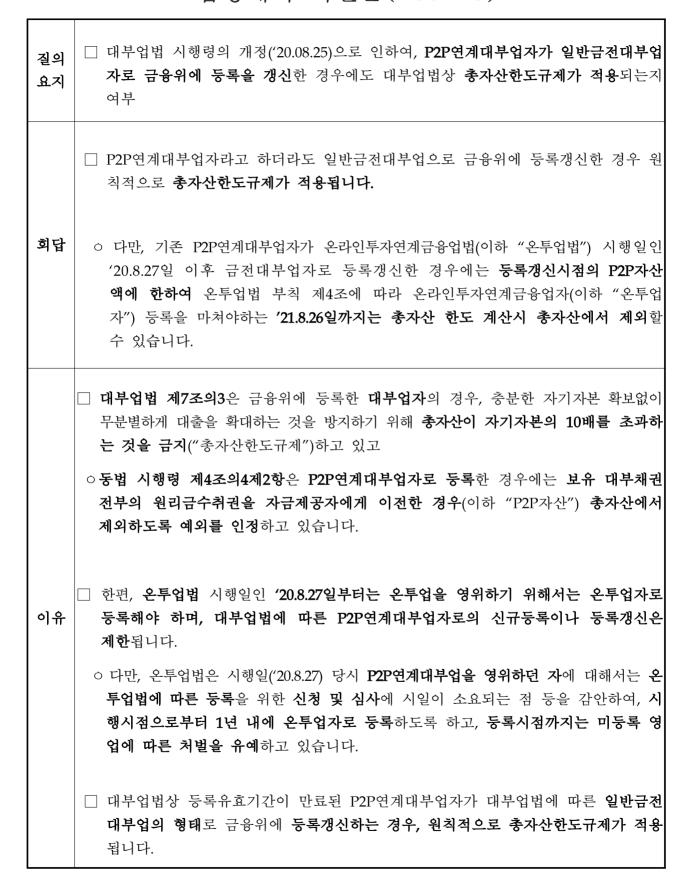
질의 요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제38조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회사는 설치법 제38조상 금융감독원의 "검 사"를 받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 설치법 제38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경우 동 조항 제1호부터 제8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조항 제9호에 따라 관련 법령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 해서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22)



금융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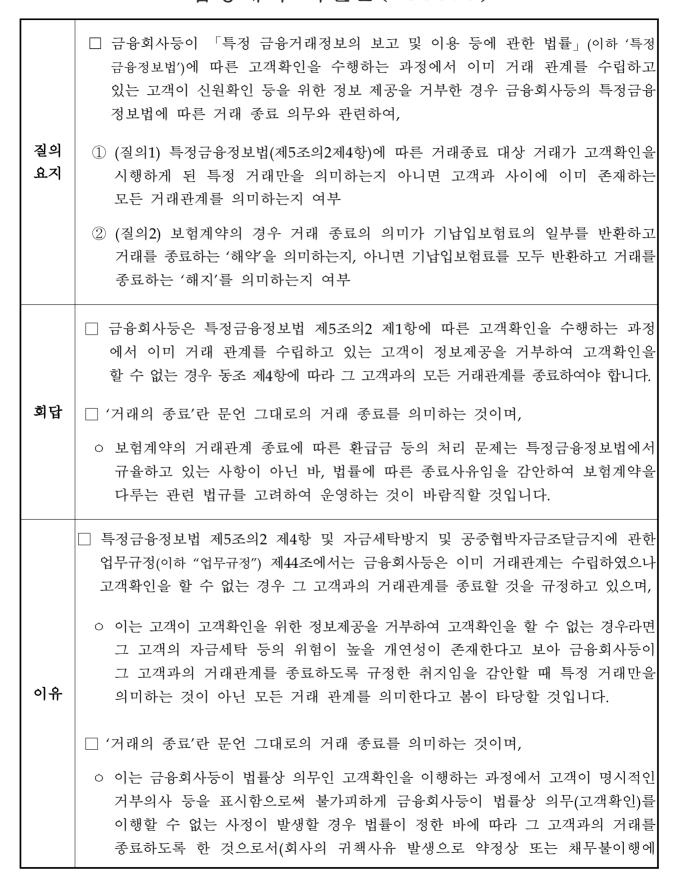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416)



- 다만, 이 경우 **등록갱신시점의 P2P자산액에 한하여** 온투업법상 처벌유예기간(1년)이 종료되는 '21.8.26일까지는 총자산한도 계산시 총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는 ① P2P자산은 그 성격상 대부업법령에서 총자산한도 규제를 통해 규율하고자하는 취지와 맞지 않은 점, ② 이에 따라, 기존 P2P연계대부업자의 경우 P2P자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온 점, ③ 예외 불인정시 기존 영업 방식이나 규모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일시에 충당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④ 온투업법상 처벌유예기간 동안 온투업 정식 등록 없이 P2P자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갱신시점의 P2P자산액의 범위내에서만 제외토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190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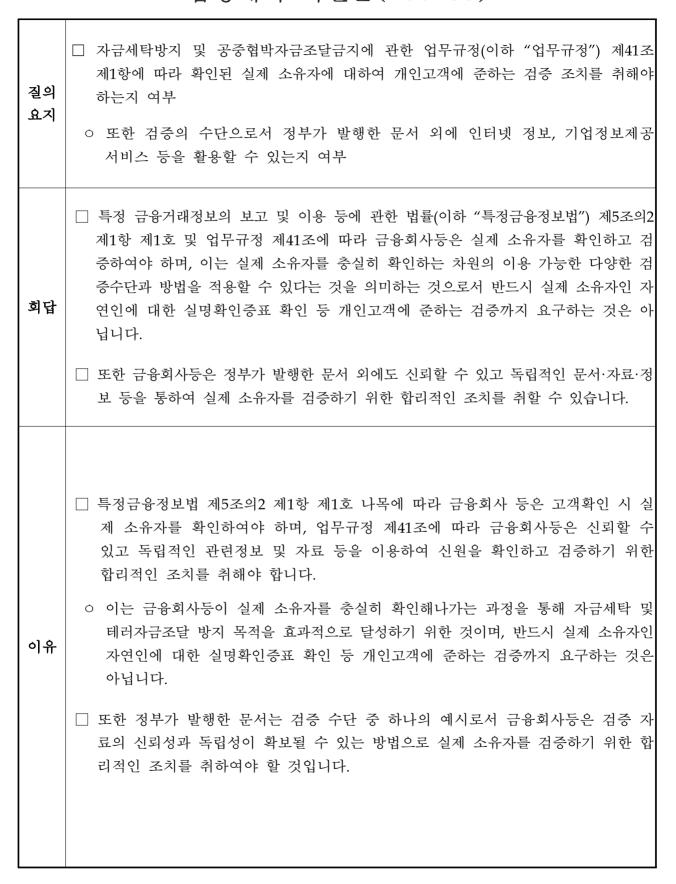
따른 거래를 종료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에 따른 종료 사유임), 금융회사 등은 말씀하신 사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계약의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환급금 등의 처리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보험계약을 다루는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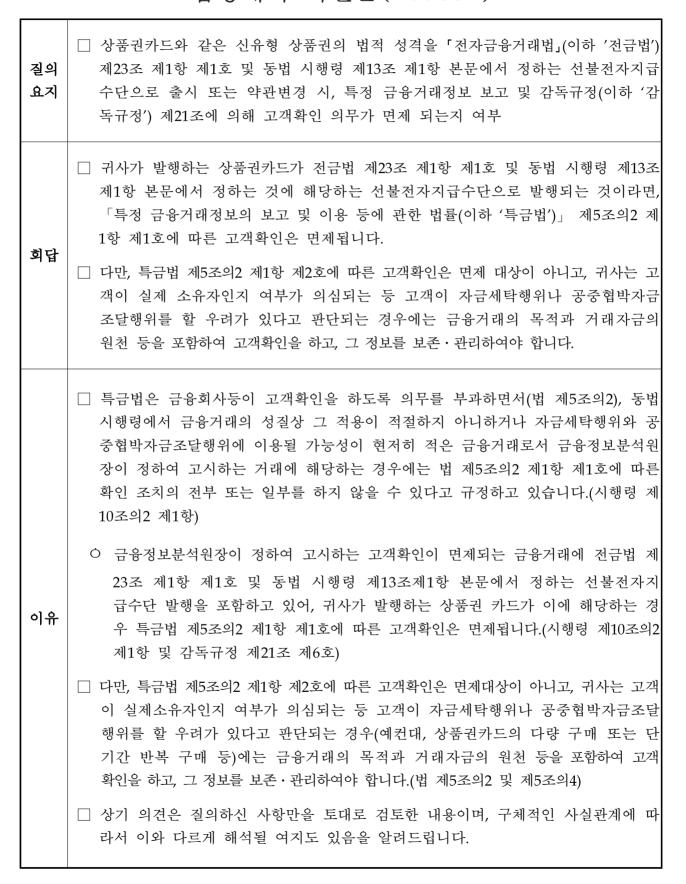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190265)

의답	질의 요지	□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녹취+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 이를 위해,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18.02월)에 제시하였듯이, 비대면 거래 시 ①~④ 중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적으로 ①~⑥ 중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복수의 비대면방식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18.02월), 48번 등] (이중확인-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적활용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권고)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 문의하신 상황 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고객이 유선상 불러준 실명번호및 신분증 데이터로 실명확인작업 수행)]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방식 중 의무로적용해야 하는 ①~④ 중 2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회답	□ 문의하신 상황(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의 경우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유	 ○ 이를 위해,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18.02월)에 제시하였듯이, 비대면 거래 시 ①~④ 중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적으로 ①~⑥ 중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복수의 비대면방식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18.02월), 48번 등] (이중확인-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권고)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 문의하신 상황 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고객이 유선상 불러준 실명번호 및 신분증 데이터로 실명확인작업 수행)]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①~④ 중 2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법령해석 회신문(190288)



법령해석 회신문(200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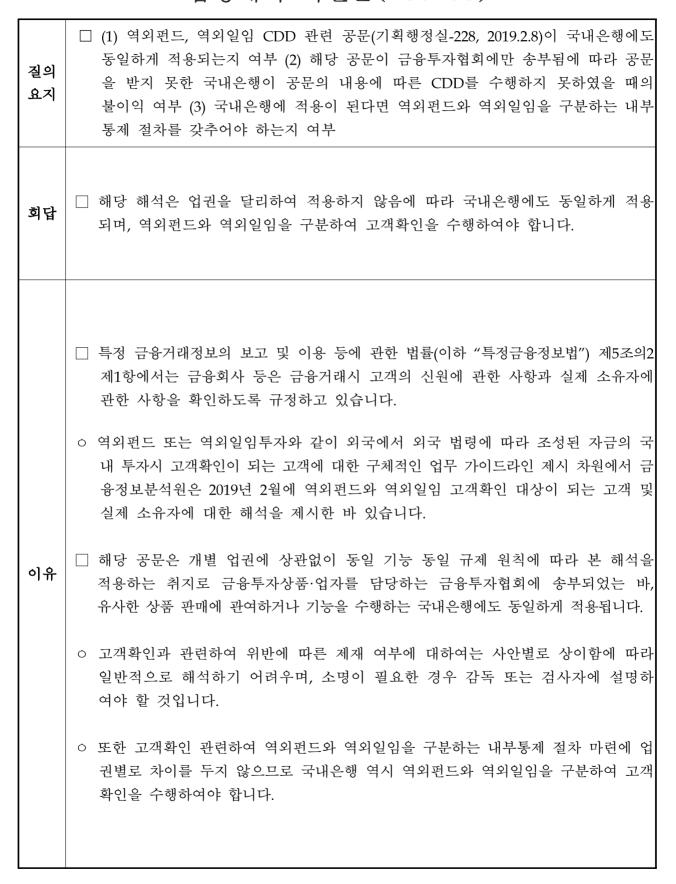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037)

질의 요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규정된 고객 확인의무를 ^①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른 이행요건의 세부내용 [*] * 동 규정 제53조 제1호의 고객확인과 관련된 정보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조 제2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53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3자인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있으며, ○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의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53조 제 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요청 시 제3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3자로 하여금 특정금융 정보법상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3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 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업무규정 제52조).
	○ 업무규정 제53조 제3호에 따라 제3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할필요가 있으며(업무규정 제53조), 특히 제3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확인 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18.2), p.104].
이유	□ 업무규정 제5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는 특정 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규정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확인 하여야 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 업무규정 제53조 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 본의 경우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 니다.
	○ 이는 문언 그대로 금융회사등이 관련 문서사본을 요청할 경우 제3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타 금융회사가 제3자로서 고객확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등에 있으므로(업무규정 제54조)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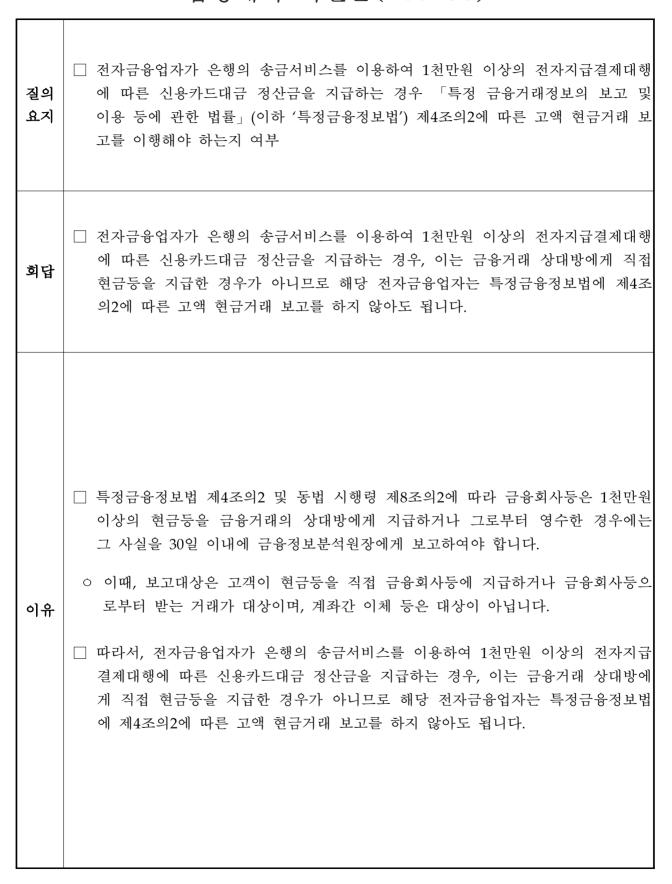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071)

질의 요지	□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내방하여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외에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회답	□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이유	 □ 특정 금용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용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 확인의무가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검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에 규정된 고객확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상에 규정된 실명확인과는 별개의 의무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도 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06)



법령해석 회신문(200130)



법령해석 회신문(200172)

질의 요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1조에 따른 실제 소유자 확인 검증 자료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된 자료(해당 자료가 최신 정보임을 전제로 할 경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신용정보회사의 자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준수하여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금융회사등은 실제 소 유자 확인 및 검증 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규정 제41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신뢰할 수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자료 등관련 절차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도 책임이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자료가 신용정보법을 준수하여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금융회사등은 실제 소유자 확인 및 검증 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공동소관)

법령해석 회신문(190046)

	①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질의 요지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	○ 동 발급이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1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 가능여부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발급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답	② 금융회사 등이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③ 신용카드업자가 1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카드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하여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불카드의 발급가능 조건 등에 명시해둔 바가 없으므로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신용 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금액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서는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등과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이므로 이는 계속적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좌의 신규 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규정은 1원이 충전된 상태의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선불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카드사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나, 여행사 등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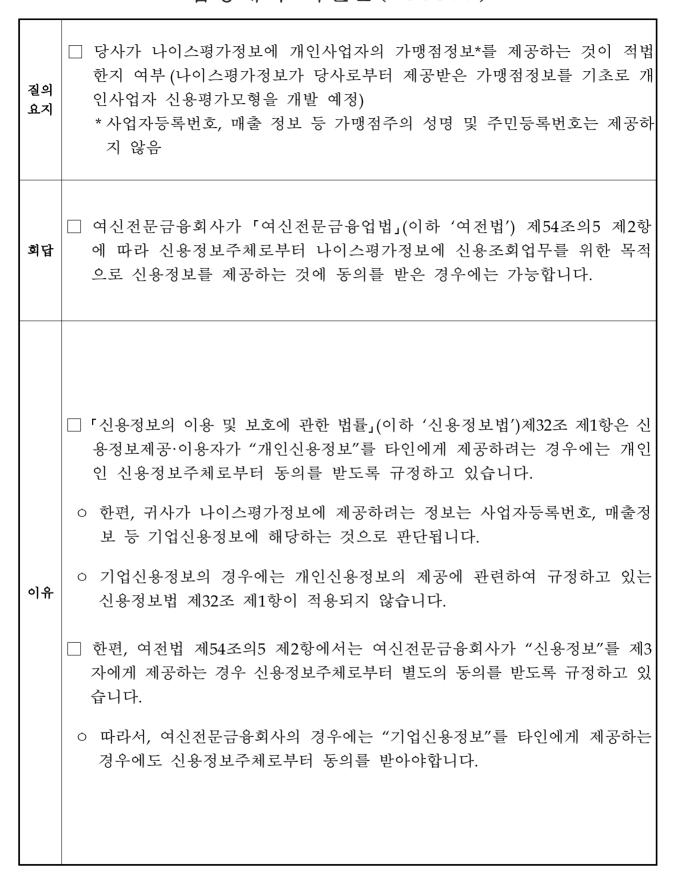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190272)

질의 요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의심 거래정보,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의심 거래정보,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 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성과관리, ⑤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카드론, 계좌 입출금 등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사기 등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이를 상기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289)

질의 요지	□ 현금융통,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에 불법 매출(의심)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에 해 당하는지 여부
회답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불법매출(의심)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 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성과관리, ⑤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불법매출(의심)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사기 등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이를 상기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77)



법령해석 회신문(200014)

질의 요지	□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표준종합정보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당행과 거래 중인 법인기업에 대한 기업개요, 재무제표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2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하므로 귀 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이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첨) □ 귀 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귀 행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에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에 누설 및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 안 전 부



수신 금융위원회위원장(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설화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 회신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24(2020.1.14.)호 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설화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 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설화 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해 해당 기관 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제12조제2 항제3호).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제12조제2항제5호)를 담당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질의하신 '급용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이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될 경우, 공공 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산시무관 규정민

권공에이터칭 선택 2020 1.16.

책과장.

난호선

협조자 현정사무관 박진희

시행 권공에이터정책자-232

접수 금용공공에이터달당관-27 (2020. 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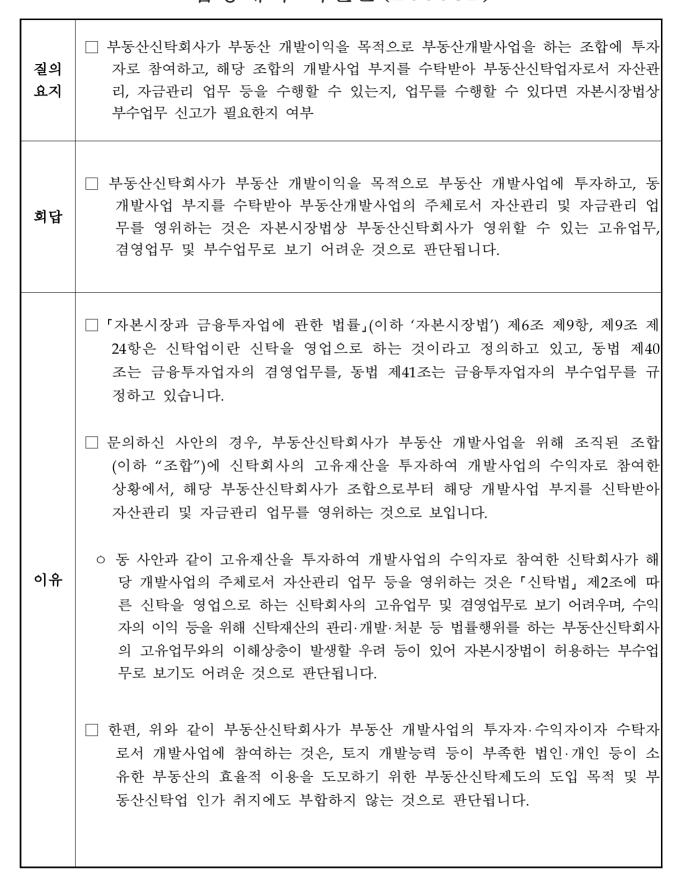
우 30116. 세종흑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여진동)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2292 텍스번호 044-204-8921 / bestab@mail.go.kr

/ 대국민 공개

법령해석 회신문(200052)



법령해석 회신문(200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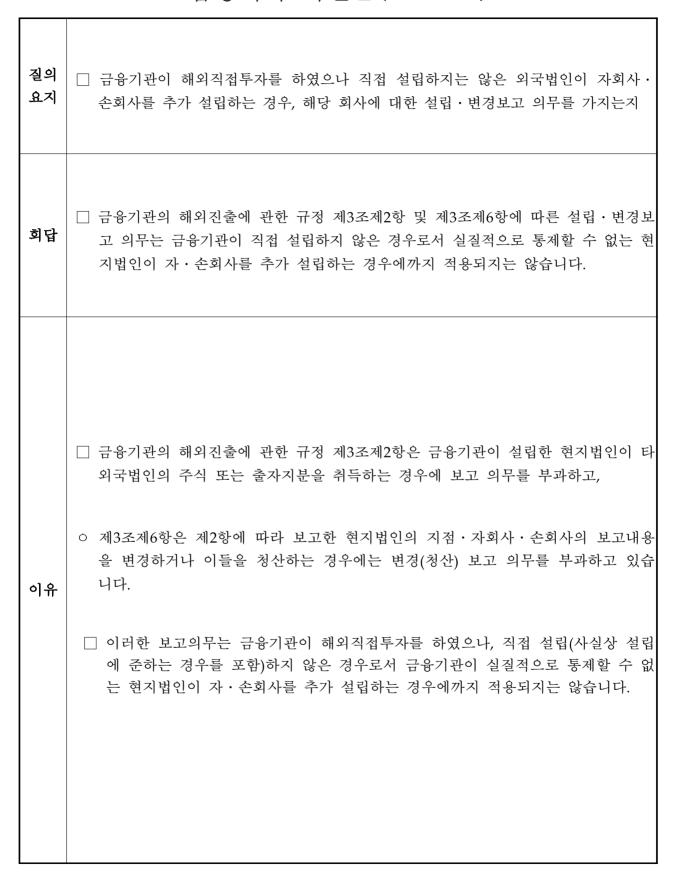
질의 요지	□ 해외 자회사의 차입 지원을 위한 카드사의 예치금 담보 제공이 금융지주회사법 및 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카드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희답	□ 해외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의 담보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지급보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신용공여의 범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는 "신용공여"를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의4제1항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제11호에서는 "채무보증"에 대해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추가투자의무·매입보장약정·유동성공급계약·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의 담보 제공이 해외 자회사의 차입 등 채무이행을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채무 						
	보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1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급보증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공여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예치금의 담보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자금증개 등의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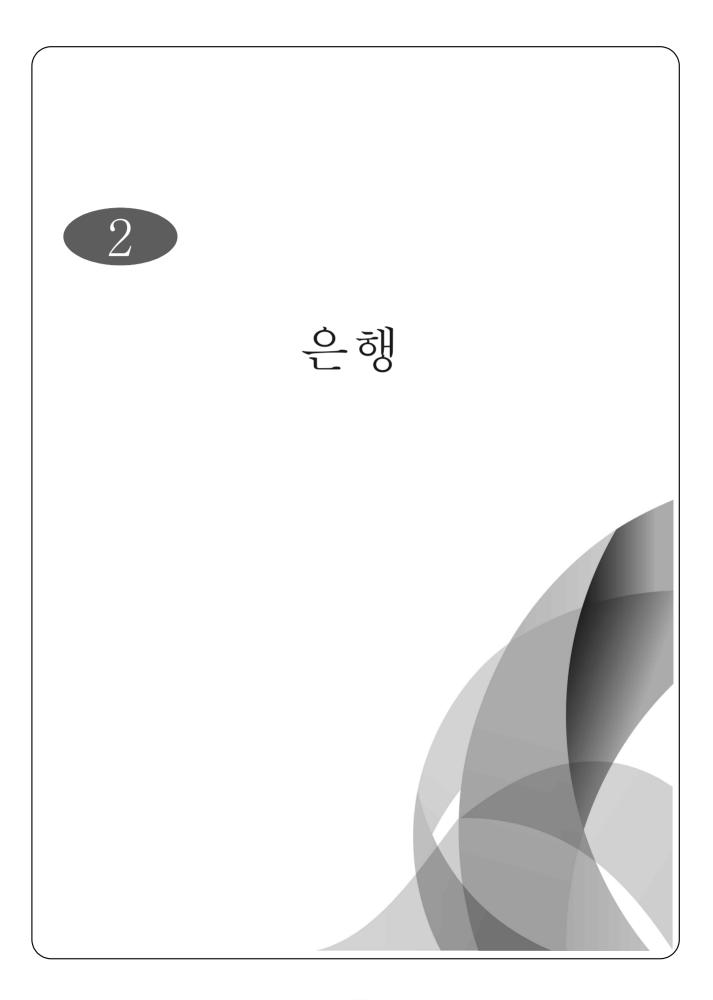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292)

질의 요지	 □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해외발행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수납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제3호 다목'에 위배되는지 여부 □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debit card) 또는 체크카드(check card)로 카지노에서 결제시 승인금액이 1,000만원의 고액일 경우 카지노 사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상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와 승인한도 금액이 있는지 여부
	③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고객이 해외 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국내카드사가 USD로 승인·매입 후 국내카지노에 USD로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카지노고객에게 잔여 칩 등을 USD로 환불하여 주는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라 국내카지노가 ①「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며 ②외국인만을 대상으로 ③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만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
회답	②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상대방 사이에 현금등의 물리적인 이동이 없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아 닙니다. 더불어 특정금융정보법은 신용카드 등의 승인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 진 않습니다.
	③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이바지하지 위한 법으로,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의 신용카드 결제나 환불 등의행위의 허용이나 금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 다만, 카지노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신용 카드 결제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카지노가 ①「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며 ②외국인만을 대상 으로 ③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만 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
- ②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 현금등의 지급이나 영수라 함은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금융회사등과 금융거 래 상대방 사이에서 현금등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 현금등의 지급과 영수를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취급한 당해 금융기관등은 보고기 관으로써 해당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 ③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이바지하지 위한 법으로, 금융회사등과 고객사이의 신용카드 결제나 환불 등의행위의 허용이나 금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 다만, 카지노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32)





법령해석 회신문(190019)

	①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요지	② 또한, 은행이 겸영업무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6호에서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바 상충되는 것 아닌지 여부
회답	①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
	②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귀 농협은행은 겸영 업무로 사전 신고를 거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①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도 포함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가목
	② 은행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협은행은 농식품투자조합결성을 할 수 있으므로 은행법상 겸영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6호에서는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영위시 적용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내용은 동법 제27조의2제4항의 요건(은행 건전성, 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저해하지 않을 것)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85)

□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범위에 ①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질의 및 ②50:50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2] 또한, 이상 두 업무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④항3호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항 4호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에는 포함되는지 □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범위에는 경영권 취득 목적의 과반 미만의 지 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ㅇ 다만,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합작법인 설립의 방법 회답 과 경영권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② 한편,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4호의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업무'에 포함된다고 판 단됩니다. □ 은행법상 인수, 합병의 개념을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범자가 해당 용어를 통해 예측가능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ㅇ 통상적으로 인수(acquisition)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병(merger)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 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영권 취득 목적이 있다면 기업이 다른 기업의 과반미만의 이유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는 인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행위가 인수·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 한편,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4호의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업무'에 포함된다고 판 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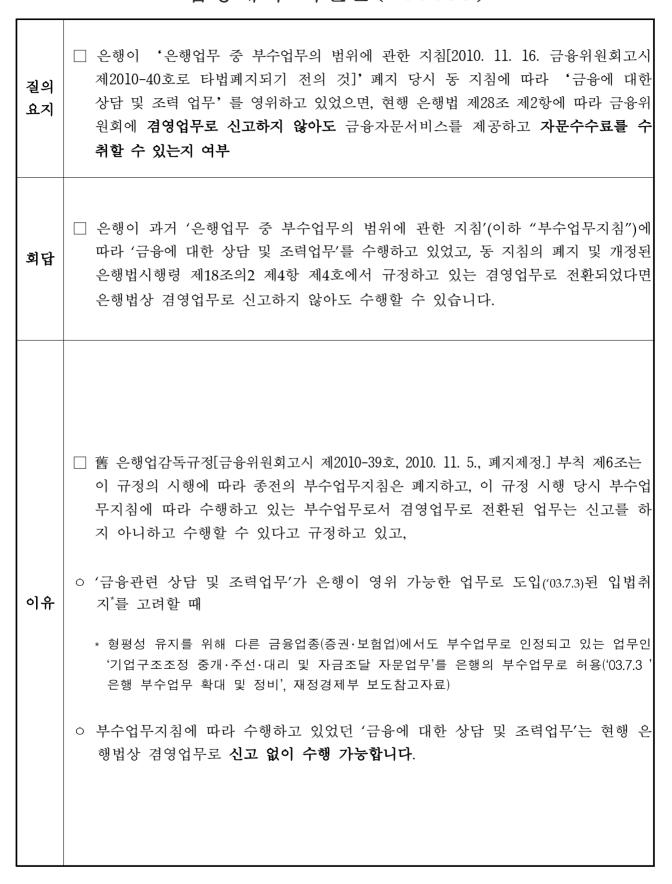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190181)

	1. 보험사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계좌개설 은행에 요구하는 경우, 계좌개설 은행이 실입금자 성명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요지	2. 보험사가 고객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입 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아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한 사안에서 명의인(보험사)이 보험료를 입금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계좌 개설 은행에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은행이 실입금자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실입금자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실입금 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예금주(송금받은 자)에게 송금한 계좌 명의인의 성명, 연락처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참조(은행제도과-154, '05.1.16.)
희답	다만,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 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 하여야 합니다.
	2. 명의인(보험사)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거래정보등을 금융회사에 요구하여 제공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정보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상계좌는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이고 가상계좌 입금 시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명의인(보험사)의 실명확인된 모계좌로 입금되기 전에는 명의인(보험사)에게 금융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상계좌로 입금된 보험료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제공이 가능한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 가 상계좌에 입금한 실입금자 성명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제공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어 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상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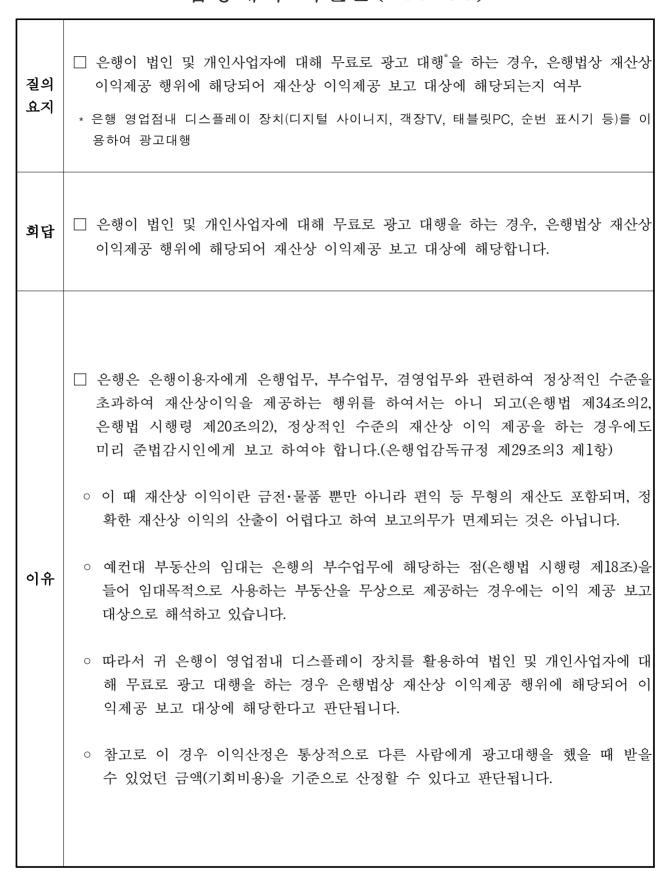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006)

1. 보험사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계좌개설 은행에 요구하 는 경우, 계좌개설 은행이 실입금자 성명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보험사가 고객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요지 보험료가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입 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아 그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 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 사하는 자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한 사안에서 명의인(보험사)이 보험료를 입금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계좌 개설 은행에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은행이 실입금자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실입금자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실입금 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예금주(송금받은 자)에게 송금한 계좌 명의인의 성명, 연락처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참조(은행제도과-154, '05.1.16.) 다만,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 회답 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 하여야 합니다. 2. 명의인(보험사)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거래정보등을 금융회사에 요구하여 제공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정보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상계좌는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이고 가상계좌 입금 시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명의인(보험사)의 실명확 인된 모계좌로 입금되기 전에는 명의인(보험사)에게 금융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보 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상계좌로 입금된 보험료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제공이 가능한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 가 상계좌에 입금한 실입금자 성명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제공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어 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상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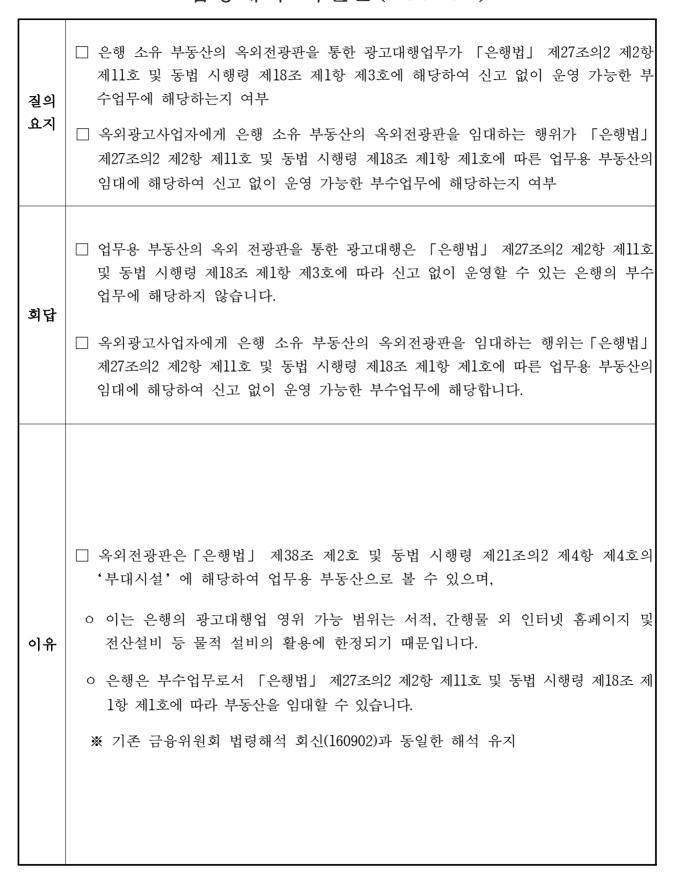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099)



법령해석 회신문(200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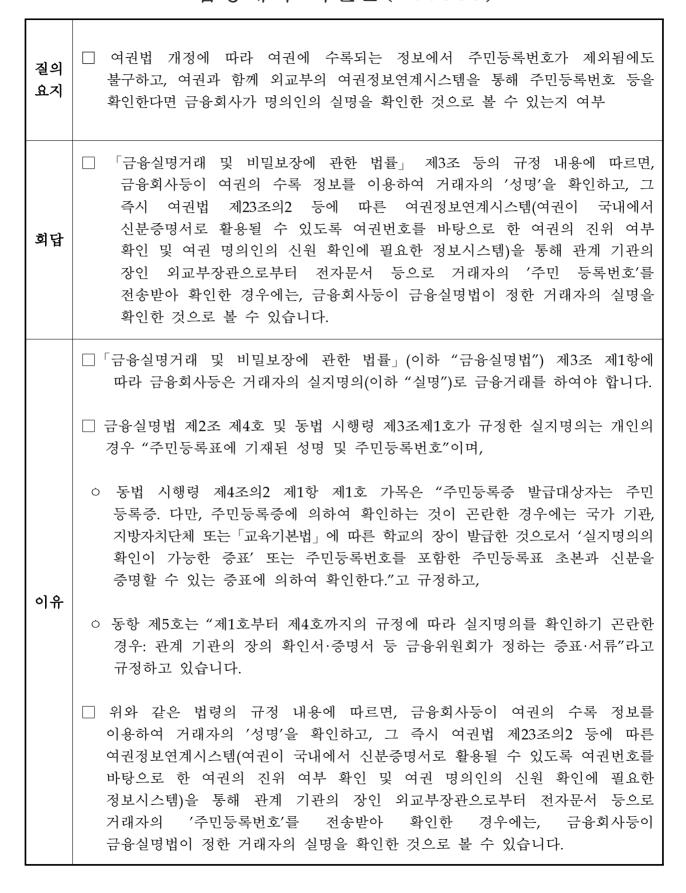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201)



법령해석 회신문(200286)

질의 요지	□ 은행이 자체 제작한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영상, 교육자료 등)를 판매하는 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
회답	□ 문의하신 업무는 「은행법」제27조의2 제2항 제9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은행법」제27조의2 제2항 제9호는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를 은행이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 관련 연수'에는 오프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또한 도서 및 간행물 '출 판'업무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 용 관련 연수'에는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고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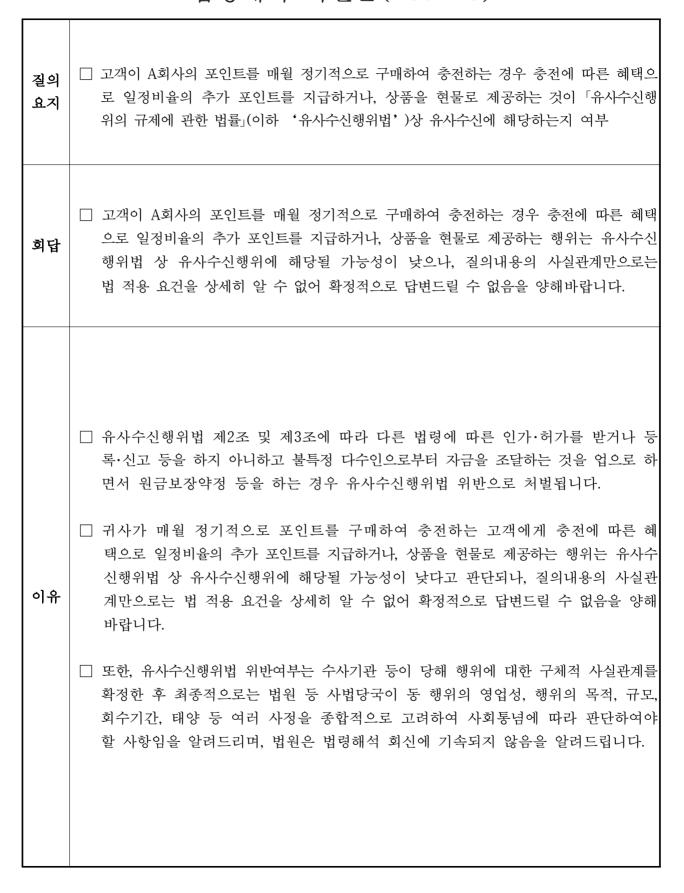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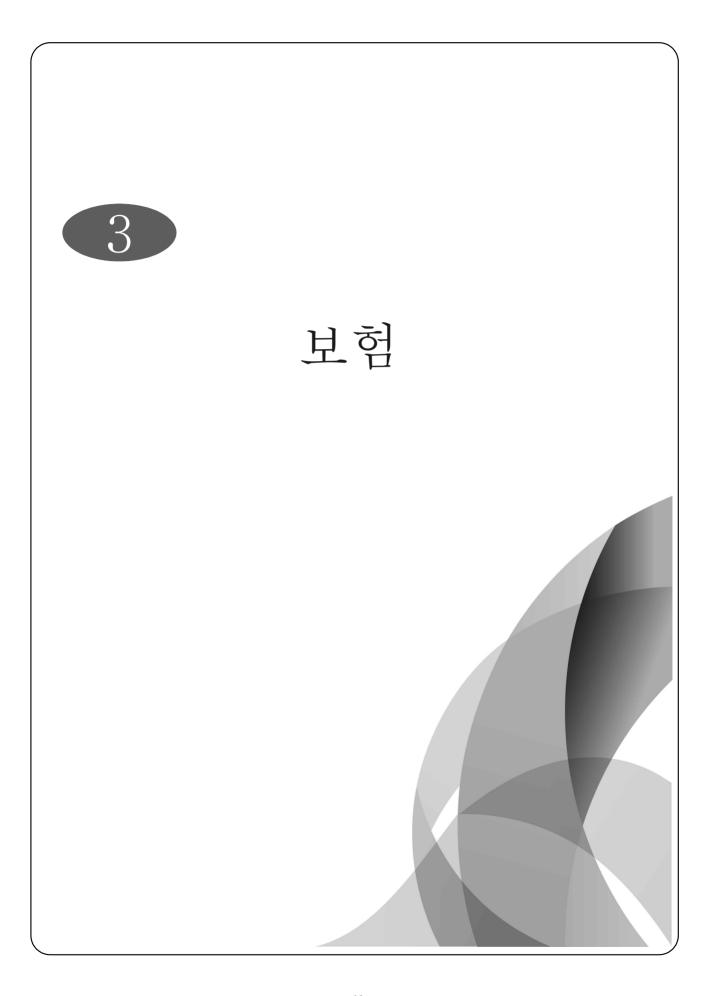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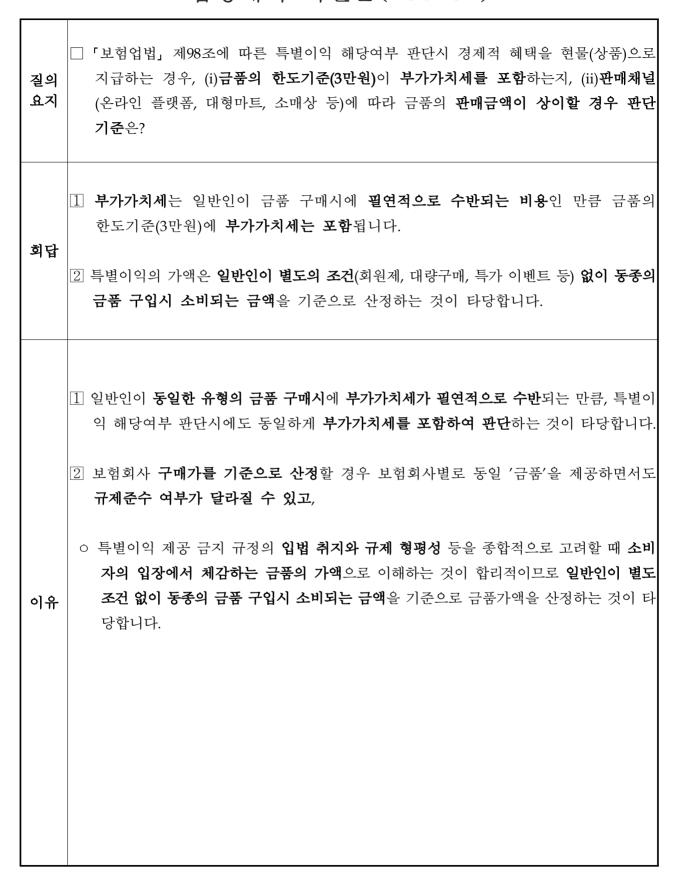
질의 요지	 □ 은행의 임·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 「은행법」제21조의2에서 금지하는 비공개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경영계획, 예산, 실적 및 유상증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은행 임·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제21조의2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누설"이란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 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도613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21조의2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이익에 반하여"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 인터넷전문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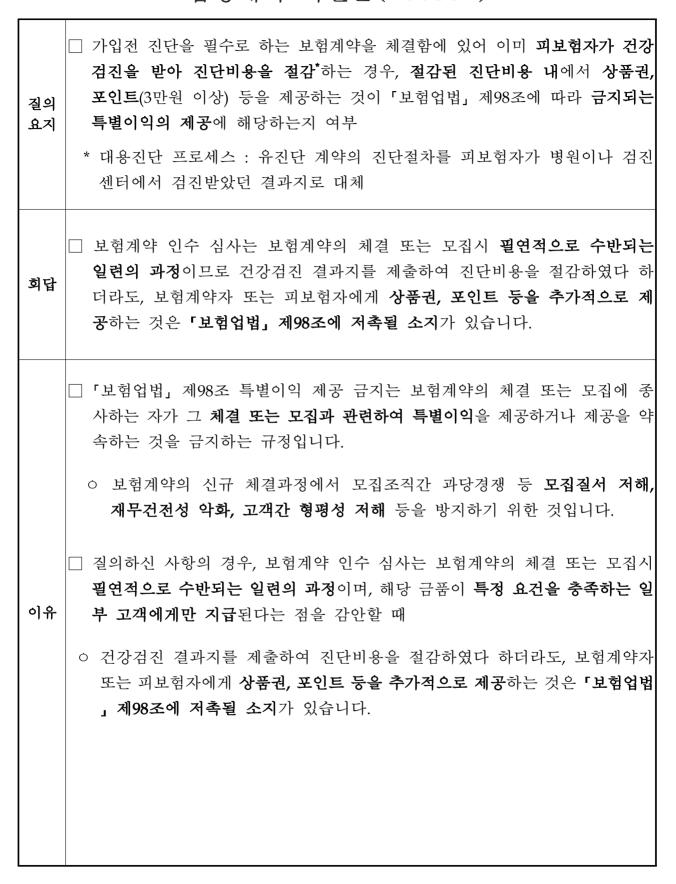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190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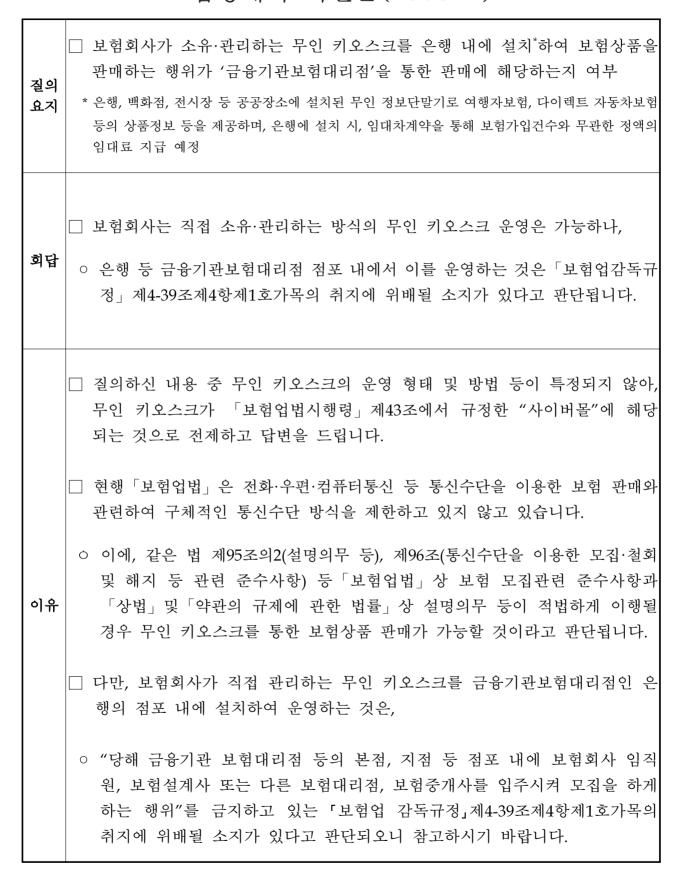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190319)

질의 요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1호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호의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환금성 없이 보험료로만 사용이 가능한 쿠폰의 경우 특별이익의 유형 중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 '금품'이란 '현금'과 '물품'을 의미하며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금성, 범용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할인 쿠폰의 경우 보험료 납부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범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보험업법」 제98조는 제공이 금지되는 특별이익 유형 중 하나로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에 저축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31)



법령해석 회신문(190344)



법령해석 회신문(190362)

질의 요지	□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보험업 감독규정」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아래 이유와 같음
이유	 □ 「보험업 감독규정」제4-11조의2는 보험대리점 지점의 정의를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이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설비를 갖추었는 지 여부, (ii)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첨부된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 매뉴얼(201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ı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 매뉴얼(2012)

2.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 매뉴얼

이 매뉴얼은 '금융감독원 보험업무 00319, 2012.8.29'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신고의무 준수를 위한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요건, 설치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한 매뉴얼 입니다.

가, 지점의 정의 및 설치신고

(1)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이란?

-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 이면서도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지칭
 - ※ 한편, 법인보험대리점은 상법상 회사이므로 그 지점 또한 상법상 지점*에 해당
 - * 본 점과 동일한 회 사에 속 하며 본 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부 분적으로 독 립된 기능을 하는 지배인이 영업하는 장소

(2)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해당여부(예시)

사례	지점설치 신고 여부
① 본점(타 지점 포함)과 동일건물내 층을	본점(타 지점 포함) 사무실과 동일 주소지 이지만 분리, 독립된 공간*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지점 신고 가능
달리하여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 총간 분리, 출입문 분리, 법인등기 상 주소 분리 (ex. 201호, 202호)등
② 다른 법인보험대리점과 사무실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영업장소로부터 독립적인 공간 및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에 지점 인정 불가
③ 본점과 원격지인 관계로 1~2명 소수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계속·반복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소이면서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지점 신고 필요
④ 개인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타 지역 사무 소를 임대하여 근무	지점설치는 법인보험대리점만 가능

법령해석 회신문(200038)

질의 요지	□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 인 이상 두어야 하고,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에 따라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며 1조원 미만일 경우 1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1조원 이상이며 5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함. 이 경우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두어야 하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수가 총 3인 이상인지, 5인 이상인지 명확히 하고자 함
회답	□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규정에 따라 총 5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이 5조원 이상일 경우 기본 보조인력 2명에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에서 기본 보조인력 2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 할 경우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이 5천억원 이하인 보험회사는 보조인력을 한명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선임계리사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60)

질의 요지	 □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전자서명, 그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활용하여 계약자의 서명을 받도록 규율하고 있음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질병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을 피보험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는지?
회답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이 준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상법 제731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보험업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취지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자'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수단으로 한정하여, 의사와 무관한 보험계약이 임의로 체 결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므로, 피보험자로부터 서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상법 제7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는 <u>타인의 사망을 보험사</u> 고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u>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을 엄격하</u> 게 제한하고 있는 바,
	○ <u>상법 제739조의3*에 따라 해당 규정이 질병보험에도 준용</u>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법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 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61)

질의요 지	□ 현행「보험업 감독규정」제4-35조의2 및「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제 2-34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AI 음성봇(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도 전화(음성 통화)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i)전화 등 음성통화, (ii)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회답	□ AI 음성봇이 보험업법령상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AI 음성봇의 기술적·물리적 구현 방식에 대한 판 단에 기초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행 규정상으로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의 방법을 전화 등 음성통화,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어, AI 음성봇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AI 음성봇의 경우, 기술적·물리적 구현 방식이「보험업 감독규정」제4-35 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	

법령해석 회신문(200145)

1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를 **수행**하 되, 투찰 등 입찰참가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에도 모집 종사자의 해당 업무지원 행위를 '모집'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 입찰공고 확인, 현장 실사, 보험료 산출(보험사 검증) 등 질의 ☑ 질의1의 모집종사자의 업무지원 행위가 모집이 아니더라도, 입찰 완료 후 보험계약 요지 체결시 또는 체결이후 해당 모집종사자를 취급자로 지정(계약자의 동의를 득함)하 여, 모집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는지? ③ **질의2**의 **모집수수료 지급이 불가**하다면, **보험사**가 **업무위탁**의 **형식**으로 입찰 관련 제반 업무를 모집종사자에게 위탁하여, 각 보험사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u>수</u> 있는지? 회답 □ 아래 이유와 같음 ①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를 수 행(이하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하되 투찰 등 입찰참가는 모집업무를 위탁 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보험업법」제2조 제12호에서 정의하는 '모집'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험업법」제2조 제12호, '모집'의 정의에 따라 모집은 보험계약체결의 대 리 혹은 중개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나,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 보험계약 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체결 관계에서 특정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 결에 조력하는 행위가 없는 등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행위라 보기 어** 려워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 ○ 다만,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 므로, 입찰계약의 성격,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의 범위 등 그 행위의 실질 에 따라 모집으로의 판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모집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 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모집이 아닌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에 해당된다면 모집수수료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③ 모집이 아닌 단순한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에 대해 위탁계약 체결 등을 통한 위탁수수료 지급은 가능합니다. ㅇ 다만, 위탁계약 체결, 위탁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합리적 내부통제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58)

질의 요지	□ 현재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포인트'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 '보험료 할인'의 '포인트' 전환을 고객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	 □ 「보험업법」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중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고객이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시 제공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인트'로 전환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포인트 전환' 관련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이 해당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질서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83)

질의 요지	 □ A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보험사의 권리 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 C보험사는 A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신용조사회사에 당해 대
	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 이때, B신용정보회사와 A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신용 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급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회답	□ 신용조사 업무 위탁 관련 보험사의 신용조사회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보험업법」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 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u>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u> <u>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u>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u>수수료는 위탁</u> 한 신용조사 업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u>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특정 신용조사회사와 신용조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u> 하거나 <u>통상적인 신용조사업무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u> 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31)

질의 요지	 □ ①보험회사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보험업법」제129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의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하는지? □ ②보험회사가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것이「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회답	□ ^①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거나, ^② 보험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 <u>츠단 성적</u> 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u>특별이</u> <u>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u> 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보험업법」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처럼, ^①특정기간(경기시즌)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거나, ^②보험사고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것은 ○ 모집질서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60)

질의 요지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당행)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u>2개</u>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개 생명 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최대 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 유권해석 200356 답변과 동일합니다.(금융규제 민원포털 '20.11.6일 등록)

법령해석 회신문(200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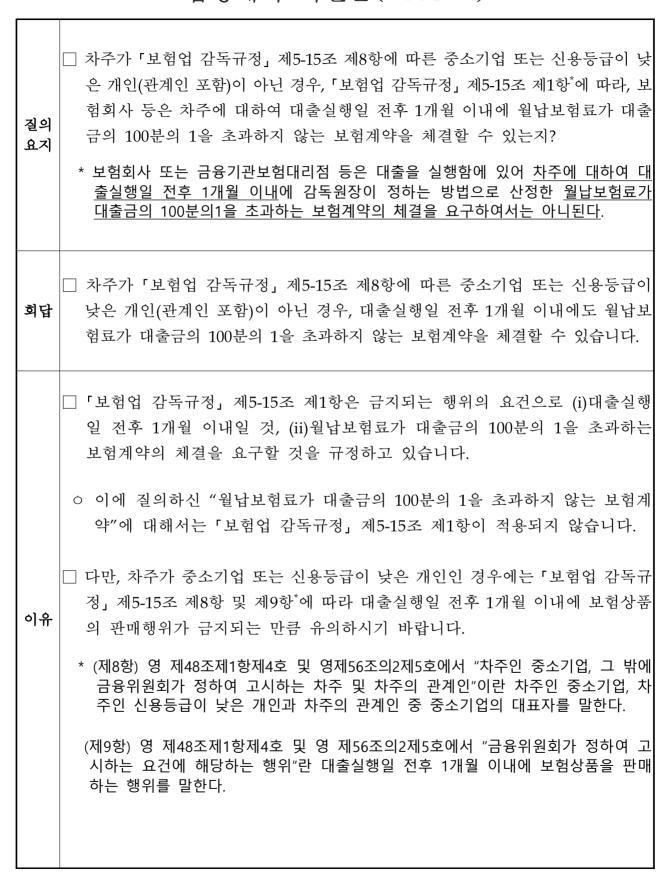
질의 요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가 「보험업법」상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할부금융회사의 자회사가 보험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체결을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 「보험업법」제87조제1항은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은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제87조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보험업법」제91조에 따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제32조제1항제2호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통해 관련 규제(25%를 등)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할부금융회사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직접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할부금융회사의 자회사가 보험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체결을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27)

질의 요지	□ 보험회사가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 '멤버쉽 크레딧*'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의 우수한 성과를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여 보험업 법 제98조 위반인지 여부 *보험회사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초서류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사원)에 게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인(상계)을 제공
회답	□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모든 보험계약자가 회사의 사원 자격을 가진다는 점, 보험료 할인이 단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가 아닌 회사의 운영 및 재무적 성과에 기초한 이사회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보험료 할인 혜택 에 관한 내용이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반영되어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질의 하신 사항은「보험업법」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유	 □ 「보험업법」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일의적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급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어, **모든 보험계약자**에 대해 **차별없이 제 공**되고
- 그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단순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代價) 또는 단순히 **보험유치를 위한 이익의 제공이 아닌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 등 **보험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 보험회사는 그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어,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할증, 보험금의 지급 등의 조건을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등에 반하지 않고, 모집질서 문란 등 공공성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 로 볼 개연성이 있습니다.
- □ 질의하신 사항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 모든 보험계약자가 사원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점, 보험료 할인이 단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가 아닌 회사의 운영 및 재무적 성과에 기초한 이사회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보험료 할인 혜택에 관한 내용이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질의하신 사항은「보험업법」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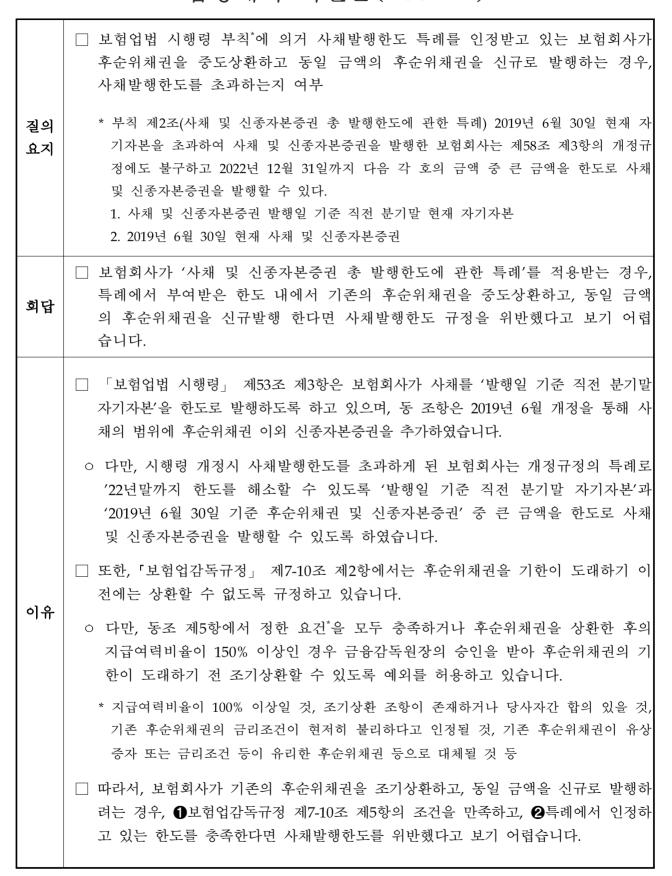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356)

	□ 보험시비 기계적 제40구제/한 미 제6원세기 코리크 시노 그스피키보험제키코드/라.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당 체사이 역어기즈과 과런되어 2개 세면 비청합사이 최대즈즈가 도이하 검으 2개 세
질의 요지	행)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개 생
쇼시	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
	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개 생명
회답	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고, 최대
	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특정 생명보험회사(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
	총액이 신규 모집총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소위 25%룰) 규제를
	정하고 있고, 동 규제의 비율은 2005년 이후에 기존 49%에서 25%로 강화되
	었습니다.
	○ 또한,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보험
	회사에 대해서는 각 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이내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05년 이전에는 합산하여 49% 이내가 되도록 규율)
	기도속 78 이고 있답니다.(2005년 이전에는 옵션이역 49% 이내가 기도속 개발)
	□ 동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 법령이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보험회사에 대해 2개 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각각의 개별 보험회사
	모집총액에 대해 25%룰도 함께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이유	없어 그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과거 25%룰 규제의 개정연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
	○ 2005년 당시 정부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적용하는 규제와 함께
	- 각각의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2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도 함
	께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령개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25%를 규제는 삭제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그 권고를 수용하고 동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개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신규모집총액의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만 준
	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67)

질의 요지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에 한정하는 것인지, 국내 집합투 자업자와의 계약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 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서 보험회사의 외국환 거래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은 그 거래상대방이 국내 또는 해외 집합투자업자인지를 불문하고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일임에 따른 위험이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 따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따라서 국내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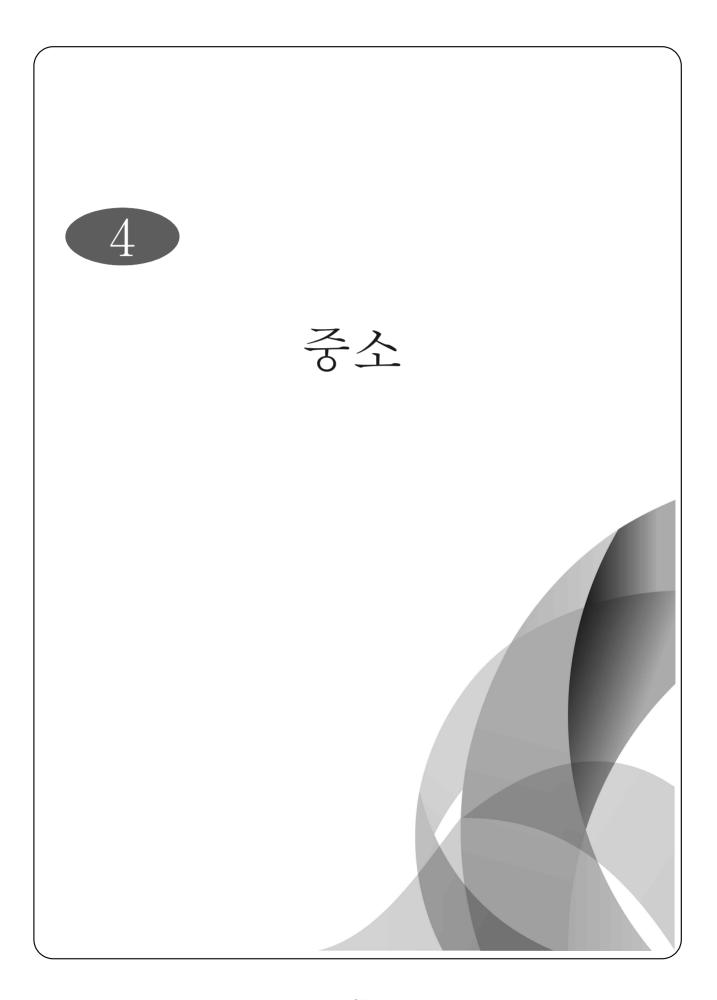
- 다만, 특례 부여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는 '22년말까지 사채 및 신종자본 증권 총 발행액이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이내가 되도록 내부이행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44)

질의 요지	□ 전자금융업자가가 대주주로서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여부를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른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반 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에 가까운 최근 분 기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회답	□ 전자금융업자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우	□「보험업 감독규정」별표4 대주주에 대한 세부요건 중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과 관련하여,
	○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기준시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 전자금융거래법규상 전자금융업자는 반기별로 재무건전성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업무보고서(경영지도기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 금융기관이 은행, 보험회사 등인 경우, 명시적으로 "최근 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은행)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일 것 (보험회사)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 따라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도 은행, 보험회사 등과 같이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에 가까운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감사인 등 회계법인의 감사(또는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및 동 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주주 요건(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필요 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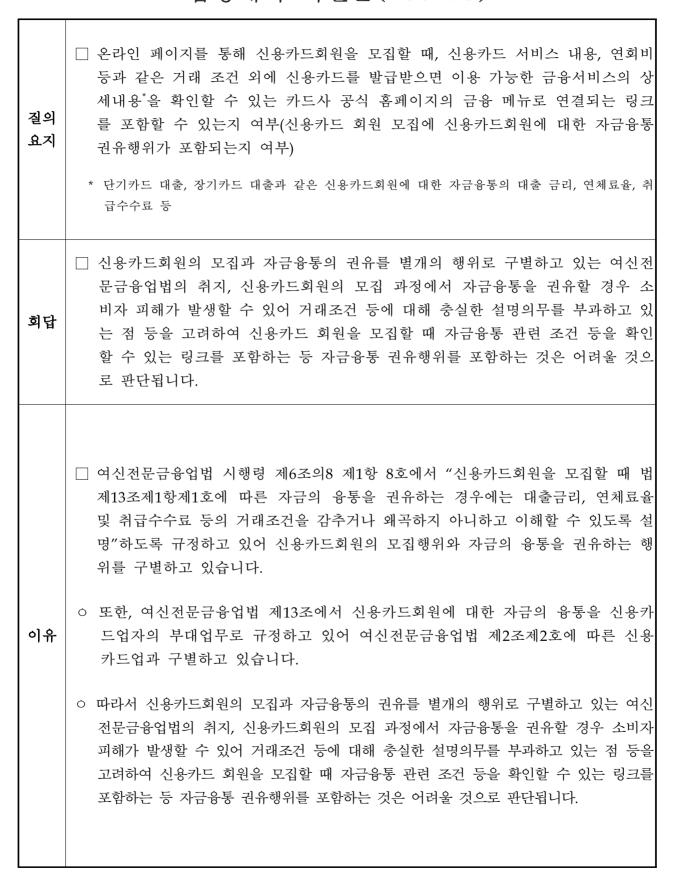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4>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1의 제1호 관련)
 -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0%이상일 것나.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 (1)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8%이상일 것
 -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이상일 것
 - (3)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 (4) (1) 내지 (3)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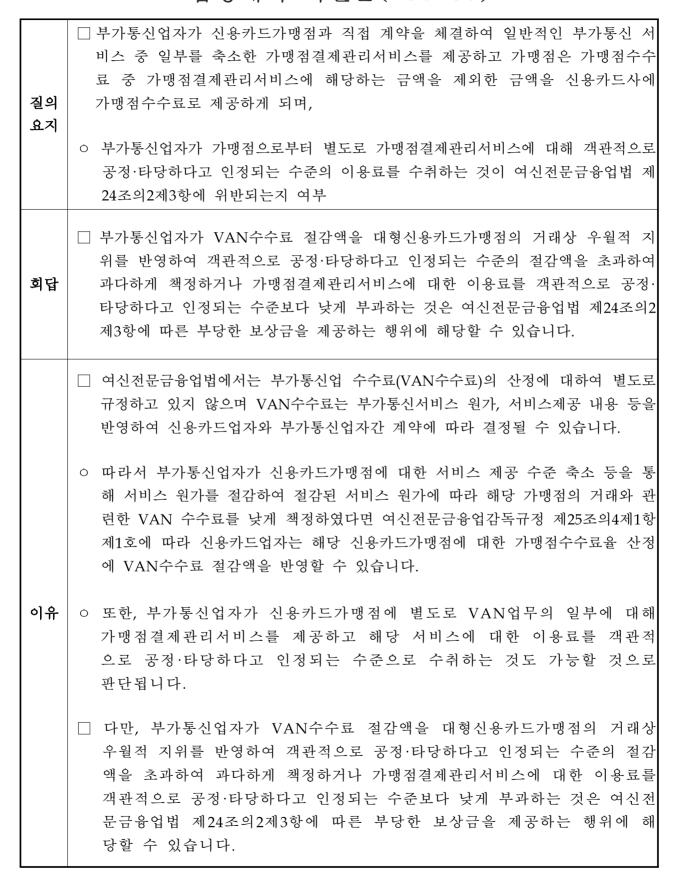


여신전문금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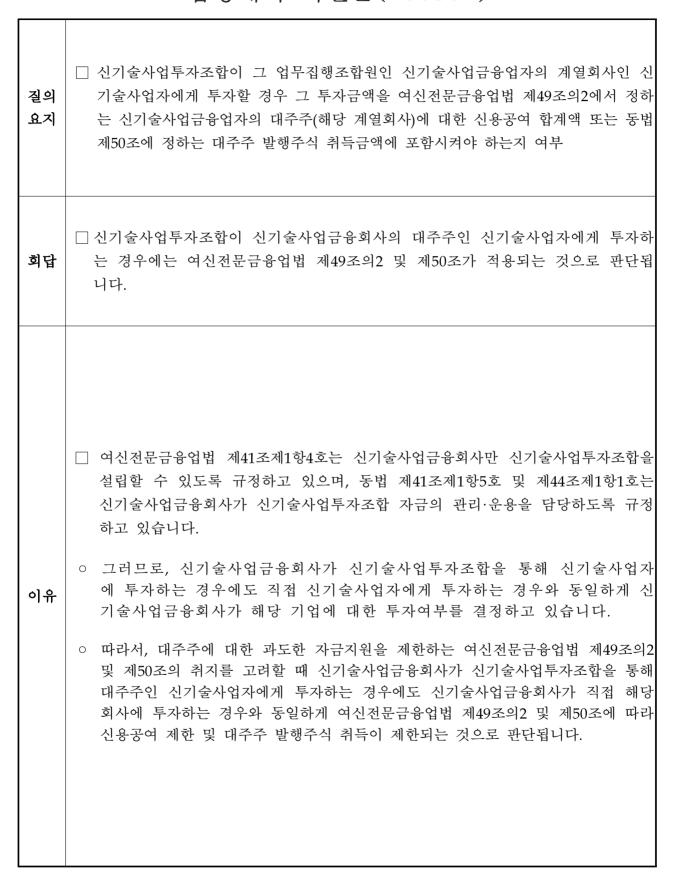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190270)



법령해석 회신문(190280)



법령해석 회신문(19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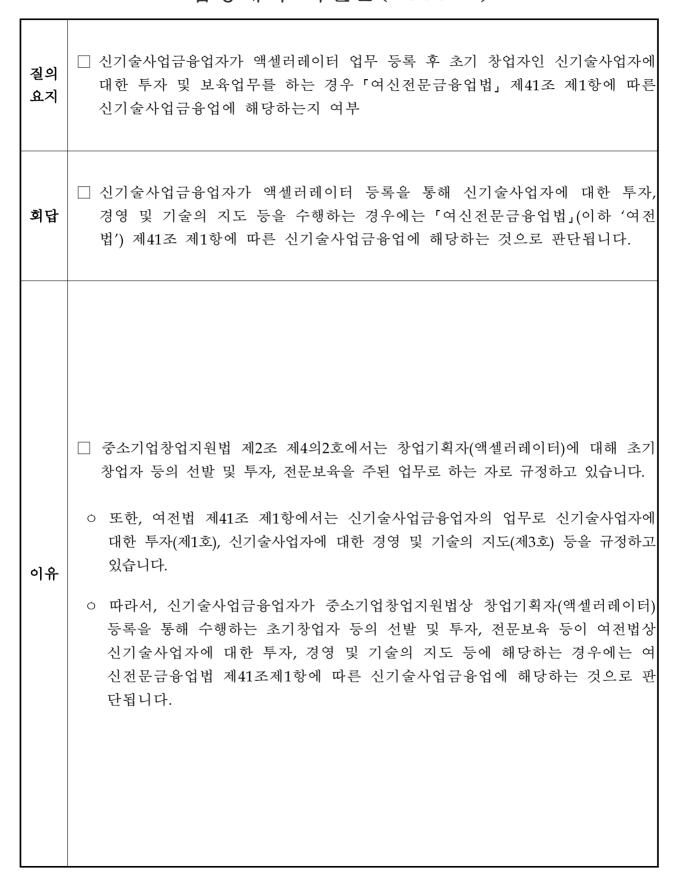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190367)

질의 요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닌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용하는데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답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14의5호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가목)하였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제항제1호 단서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조합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반드시참여하고 있어야 하나, 기술지주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15)

질의 요지	□ 카드사의 회사, 로고, 카드번호, 카드명의인 이름 등을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신용 카드 앞면에는 제휴사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 해당 카드가 발급되는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여전법') 제50조의9 제2항 2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3항 3호 등 여전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여전법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 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여전법 제50조의9 제2항 2호), 해당 여신금융상품의 내용상금융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왜곡·과장·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동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3항 3호)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카드사의 명칭이나 로고를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제휴사 로고를 신용카드 앞면에 표시하여 광고할 경우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와 제휴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에 글자 크기, 위치 등을 달리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비자가 발급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만 여전법 제50조의9 제 2항 2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3항 3호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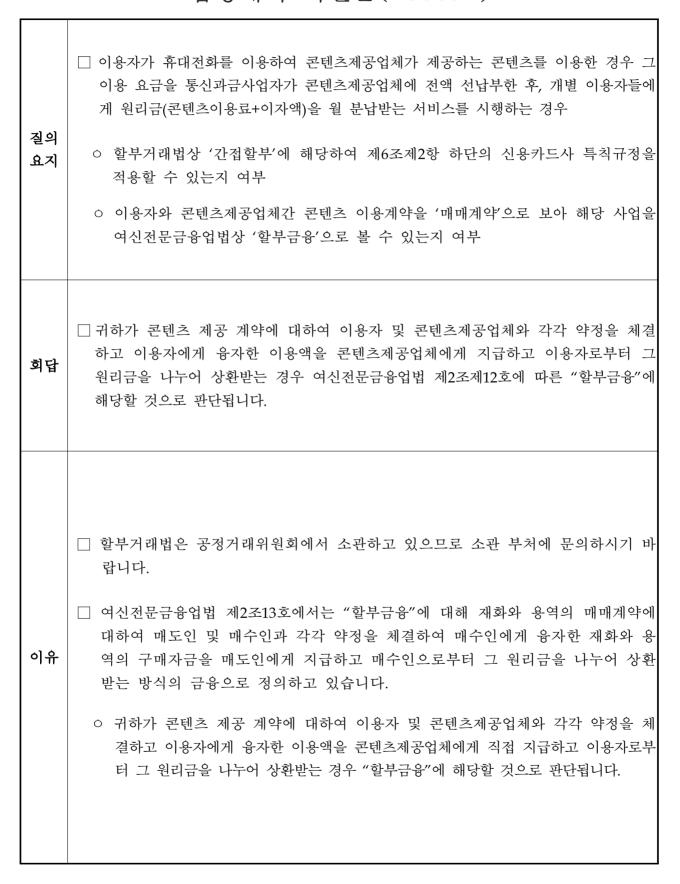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076)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이 법인 신용카드(정부 및 지자체에서 경비 집행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 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조기 결제)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질의 하 '여전법')」 제19조제5항제1호, 제2호의 신용카드가맹점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제 요지 21조의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해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법인 신용카드), 기간('20.12월) 한정, 선결제 약정 체결, 사후에 물품·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 □ 법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약정하고 약정된 기간 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여전법 제19조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또 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신용카드 결제 이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전법 제19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에 해당될 소 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이후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서류 등의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회답 - 나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 드로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유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같 은 법 제70조제3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편, 신용카드로 조기결제 하였음에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전 신 용카드가맹점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철회 또는 항변권이 보장되거 나 신용카드업자와 법인 신용카드회원 간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은 한 조기결제에 따른 카드결제대금 부담은 해당 법인회원이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여전법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유 ㅇ 같은 법 제70조제3항제2호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 또는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현행법상 신용카드회원의 결제 시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의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 행위와 그 행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를 통한 가장 또는 허위거래를 금지 하고 있는 여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간 신용카드 조기결제(先결제)가 일반적·공 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 □ 문의하신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는 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 조건*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여전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 대상(법인 신용카드), 기간('20.12월) 한정, 선결제 약정 체결, 사후에 물품·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 다만, 이 경우에도 결제 대상이 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반드시 이행되어 야 할 것이며 추후 실제 물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만일 신용카드 결제 이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여전법 제19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 소지가 있으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한편, 신용카드로 조기결제 하였음에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전 신용카드가맹점이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에 의해 철회 또는 항변권이 보장되거나 신용카드업자와 법인 신용카드회원 간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은 한 조기결제에 따른 카드결제대금의 부담은 해당 법인회원이 지 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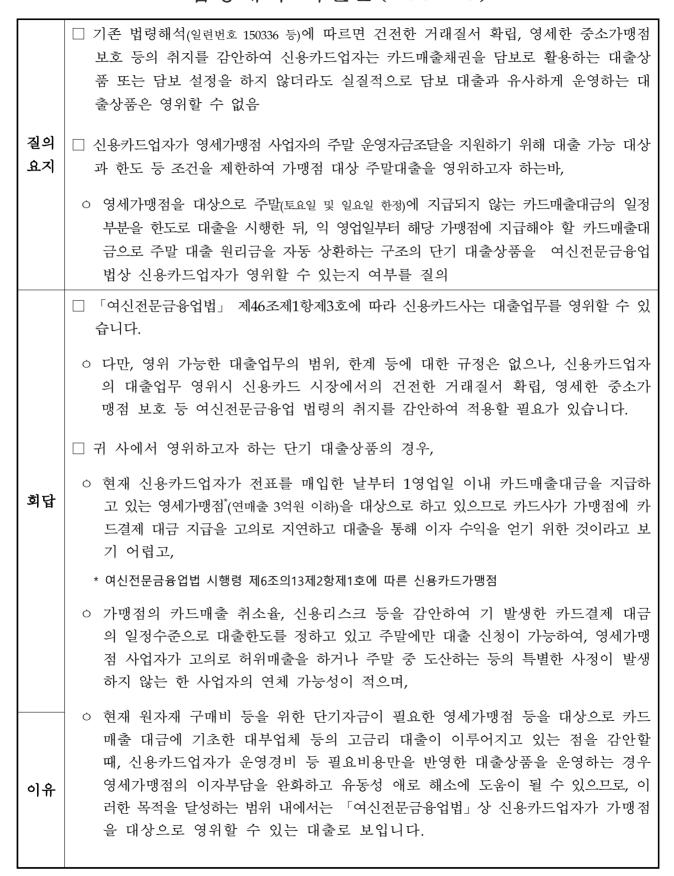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094)



법령해석 회신문(200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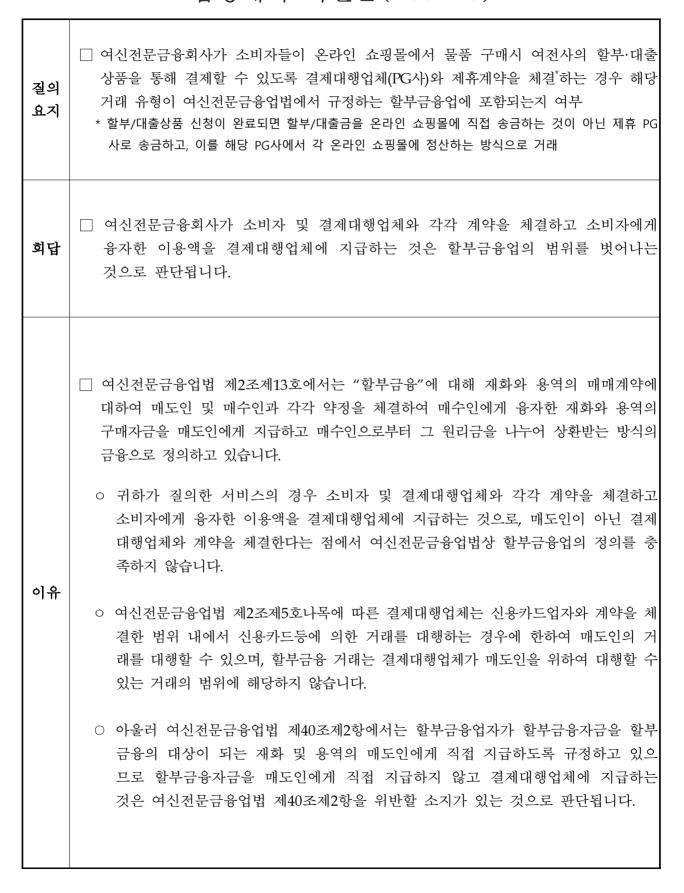
질의 요지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는 적용되지 않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제3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포함한 "여신전 문금융회사"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하거나 발 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동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자금증개 등의 행위를 하는 것 이 금지되므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대주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나머지 조합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의무, 이해상층 이슈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하도록 하는 등 규약내용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40)



- □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매주 동 대출상품을 통해 주말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가맹점 사업 자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말에 가맹점에 카드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카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출금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영세 가맹점 사업자의 전체 카드매출 대금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자금 용도로 주말 중 지급함으로써 사업자가 익 영업일에도 카드매출 대금 일부를 수령하여 현금흐름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등 가맹점 사업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 예) 가맹점 전체 카드매출 대금의 50% 이내 등

법령해석 회신문(200148)



법령해석 회신문(200301)

질의 요지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약관을 폐지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협회 사후보 고절차 또는 금감원 사전신고절차를 경료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약관의 폐지시에 거쳐야할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약관이 폐지될 경우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기존 고객들은 약관 확인의 어려움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제1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약관의 폐지시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금융약관이 폐지될 경우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기존 고객들은 약관 확인의 어려움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호저축은행업

법령해석 회신문(200002)

질의 요지	당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하고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당사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상표를 계열사에서 사용하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고자 합니다. 2. 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지적재산인 상표권의 사용료 수취가 동법 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3. 따라서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답	 □ 귀사가 문의하신 계열회사에 대한 상표권 제공은「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동법 제11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상호저축은행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승인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업무) 제1항은 저축은행이 수행 가능한 업무를 나열하고 있고, ○ 동항 제16호는 부대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문의하신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금융감독원 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39)

질의 요지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위 대책 시행 후 만기연장을 위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담보 인정비율 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례① :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상품('09.11 취급)이 대주주 및 상호 변경으로 폐지 됨에 따라 '19.11월 만기연장 시 다른 상품으로 대환(조건은 기존과 동일) · 사례② :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상품('17.6월 취급)이 내부 정책상 폐지되어 '18.12월 만기연장 시 다른 상품으로 대환(조건은 기존과 동일)
회답	 □ 귀사가 문의하신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대환 건은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대환 이므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의하는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존대출 대환 시 강화된 LTV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 주택안정대책('18.9.13) 관련 금융부문 FAQ 17번 문항은 "기존 주담대의 단순 만기 연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5(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신규대출의 정의에서는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대출 건들의 경우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대환에 해당하여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14)

□ (질의1) A저축은행이 아래 구조의 펀드를 그룹 계열사와 함께 투자하는 경우 ①지분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는지, ②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구분	출자자	출자금액	지분율	비고
IP1	A저축은행	110억원	22%	대주주 A금융지주(100%)
LF I	A은행	200억원	58%	대주주 A금융지주(100%)
A	금융그룹 소계	400억원	80%	
LP 2	기타기관 들	50억원	10%	
GP	A벤처스	50억원	10%	대주주 A금융지주(100%)
	합 계	500억원	100%	

※ A저축은행 자기자본: 2,000억원

□ (질의2) 초기 투자 및 추가투자로 인해 펀드 구조가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펀드의 저축은행 동일계열기업 여부 및 이에 따른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적용여부

추가 투자후 초기 투자시 구분 출자자 출자금액 지분율 출자금액 지분율 A저축은행 110억원 110억원 22% 14% IP1 A은행 110억원 22% 400억원 51% A금융그룹 소계 220억원 510억원 44% 65% LP 2 기타기관들 230억원 46% 230억원 29% A벤처스 GP 50억원 10% 50억원 6% 합 계 500억원 100% 790억원 100%

질의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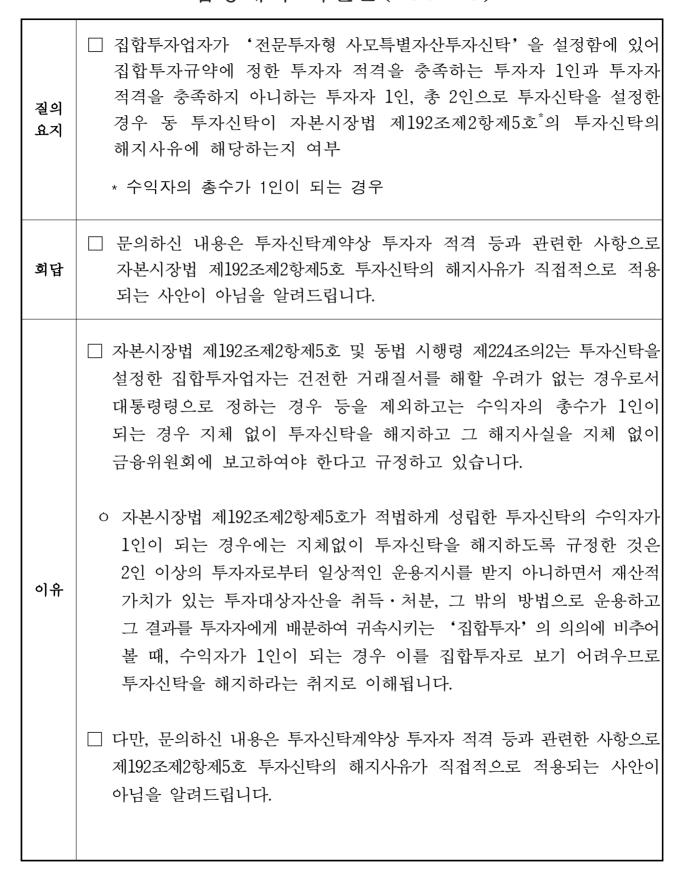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 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u>유가증권(</u>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A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4. 비상장(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 6. 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내
- □ (질의3) 만일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출자금 회수 등을 통해 위법사유가 해소 되는 것인지? 해소 기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 (질의4) 펀드약정 상 출자금 회수가 불가하거나 펀드에서 출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일정 기간 내 출자금 회수가 불가한 경우 당행 출자가 위법행위가 되는 것인지?

	□ (질의1) 해당 펀드는「상호저축은행법」(이하'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되어,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됩니다.
회답	□ (질의2) 초기 투자 시에는 해당 펀드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 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A은행의 추가 투자 후에는 지분 요건상 제30조 제2항 제 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초기 투자 시부터 추가 투자 이전에라도 지분변동과 관계없이 시행령 제30 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질의3, 질의4) 법 제18조의2 제1항 위반 시, 동법 제24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벌칙 및 임직원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초과 사유가 자기자본 변동 등 감독규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의 해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1) 해당 펀드는 저축은행의 대주주(100%)인 A금융지주가 100% 소유하고 있는 A은행이 58% 보유하므로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5호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A금융지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A은행)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해당 펀드)
이유	□ (질의2) 초기 투자 시(A은행 지분율 22%)에는 해당 펀드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 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A은행의 추가 투자 후(A은행 지분율 51%)에는 지분 요건 상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 대주주가의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에 해당" 하는 경우 초기 투자 시부터 지분변동과
	관계없이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계없이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질의3, 질의4)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유가증권 보유한도) 위반 시 동법 제24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벌칙 및 임직원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질의3, 질의4)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유가증권 보유한도) 위반 시 동법

자본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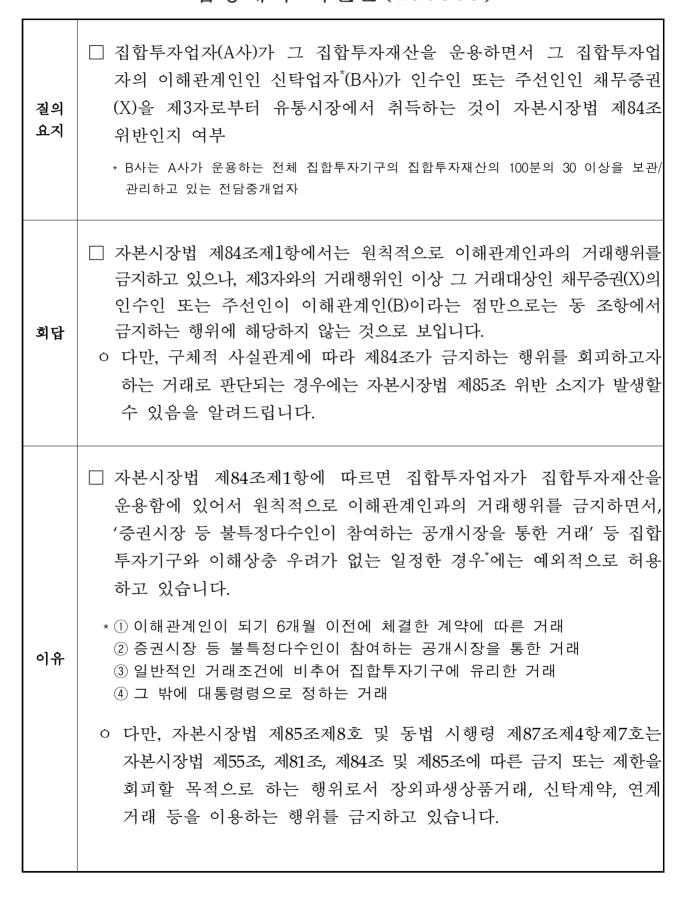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190216)



법령해석 회신문(190284)

질의 요지	□ 엄브렐러 구조로 만들어진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상위 집합투자기구와 하위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통상 엄브렐러 구조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별로 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등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시 자본시장법 제18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은 하위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국의 펀드제도상 구체적인 펀드구조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통상 엄브렐러 구조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별로 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등을 달리하는 점등을 감안시 자본시장법 제18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은 하위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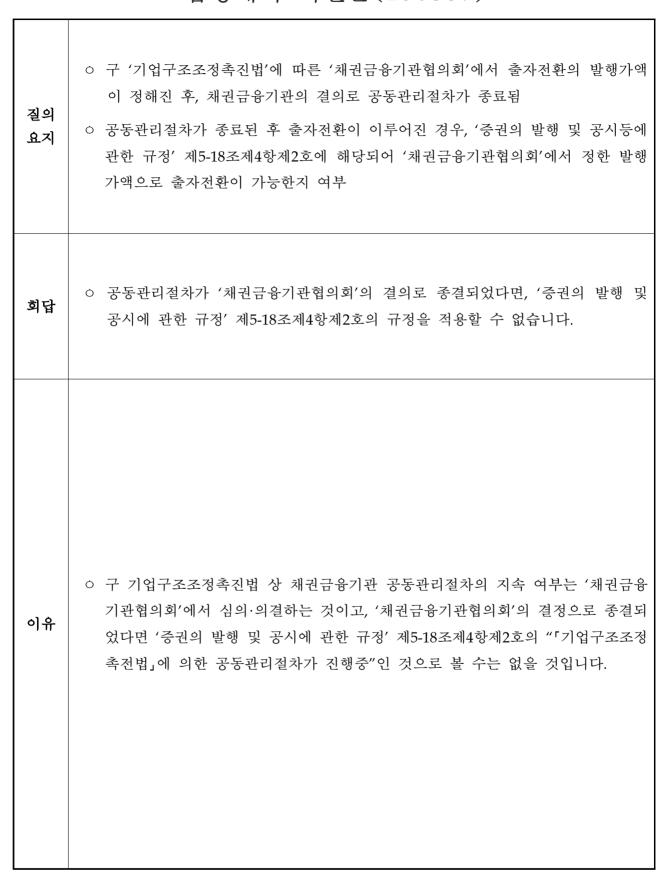


- □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3자와의 거래행위인 이상 그 거래대상인 채무증권(X)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이해관계인(B)이라는 점만으로는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8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27)

질의 요지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하기간 종료 후 기존의 보수로 회복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보수인상인지 여부
회답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더라도 기존보수 수준으로 운용보수를 상향할 때에는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유	 동 조항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의사를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 이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운용보수 인하기간 동안 신규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 는 경우 신규 투자자는 인하기간 종료 후 운용보수가 상향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존보수 수준으로 운용보수를 상향할 때에는 수익 자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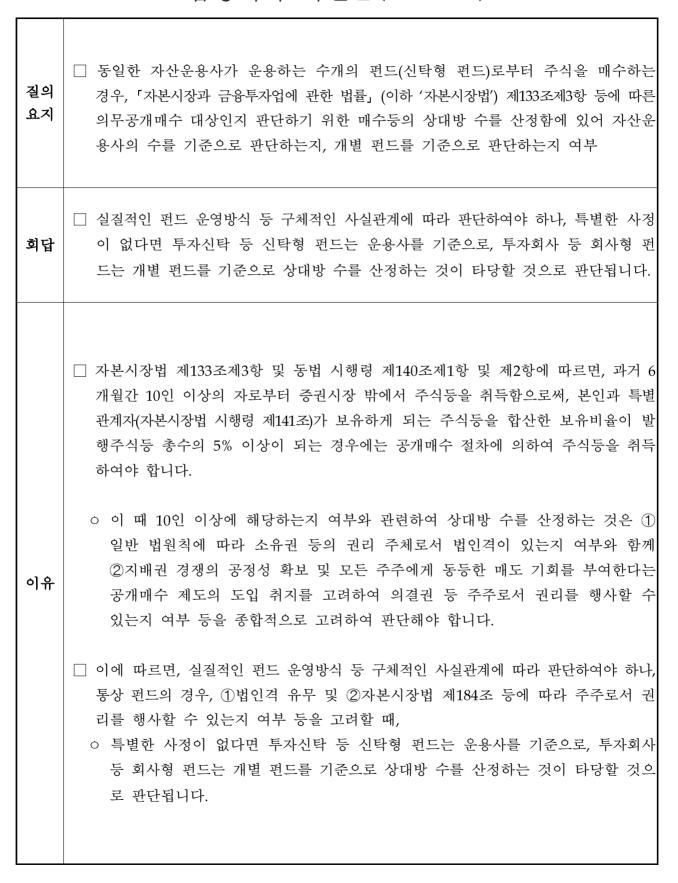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190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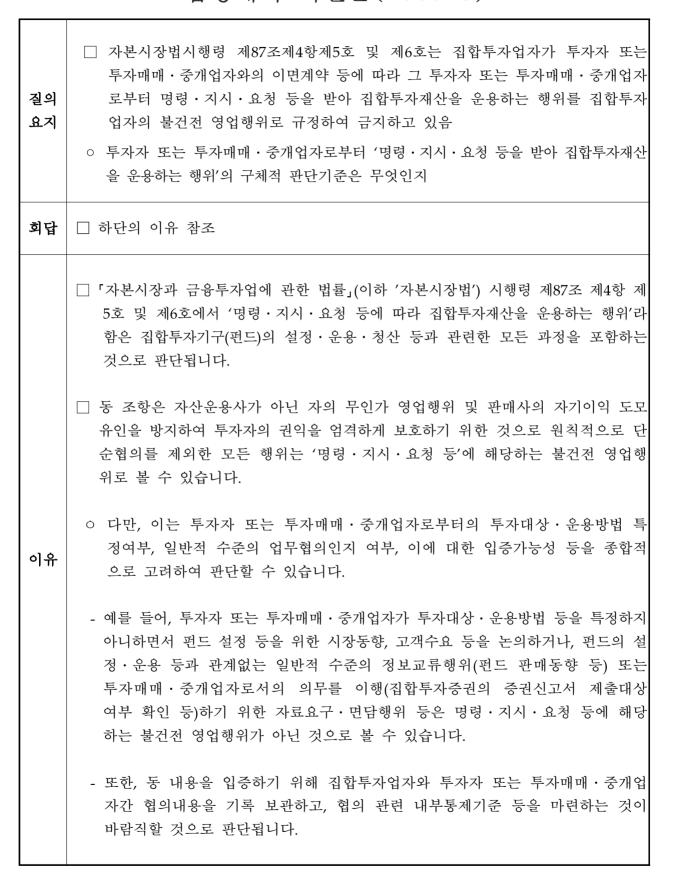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010)

	<제목>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자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적용 여부
질의 요지	○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신탁업자가 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제46조의2에 따른 적정성 원칙,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제49조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제49조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 됩니다. 또한,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되며,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유	○ 특정금전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에 따라 투자자가 신 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등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계약이며, 자본 시장법 제109조에 따라 신탁계약의 내용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 득할 재산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등에 대하여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또는 적정성원칙이 적용됩니다.
	○ 특히, 개인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업자는 운용대상 등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9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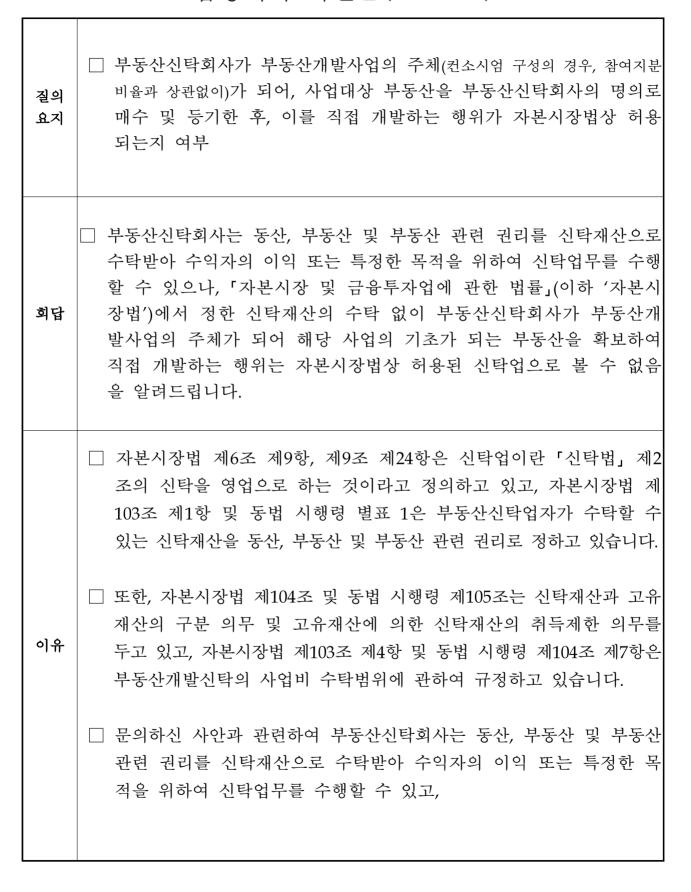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011)



법령해석 회신문(200016)



법령해석 회신문(200040)



○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43)

질의 요지	□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수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제2호의 4에서 규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될수 있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에 따라 관계인수인과의 거래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동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한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에게 유리한 거래라고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 거래상대방 선정 절차의 합리성·공정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로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79)

질의 요지	□ A회계법인은 손해보험사 B, C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B, C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와 C 공동인수)"을 체결하고자 함 *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질의 ① 상기 보험계약이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해당하여 「공연회계사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무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다목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A회계법인이 피감사인인 보험사(B, C)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시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계약 시 연간보험료를 선납하고 재무제표상 선급보험료로 계상하는 점에서 이를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보장성 보험상품에서 보험금 청구권도 장래 보험사고 발생 시 금액이 확정되므로 (계약 당시에는 그 채권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이것도 1억원 이상의 채권 관계가 있다고보기 어려움 ※ 관련규정 < 공인회계사법 > 제33조(직무제한)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② (생 략)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3. (생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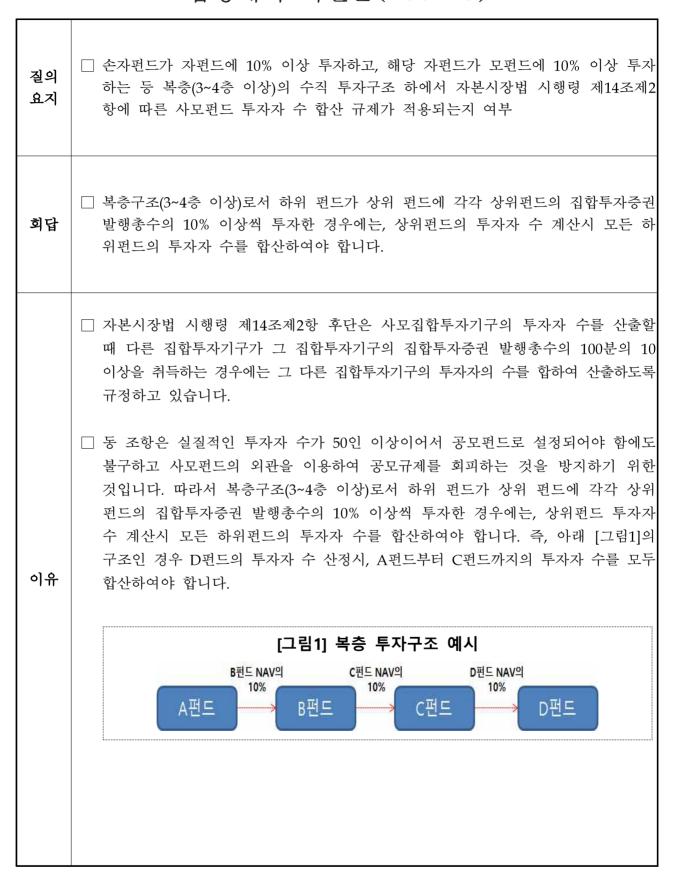
② (생 략)

- 제14조(직무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공인회 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 2.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u>다만</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ㆍ적금 등 채권
 - 다.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 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 사.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3.~5. (생략)

②~⑤ (생 략)

법령해석 회신문(200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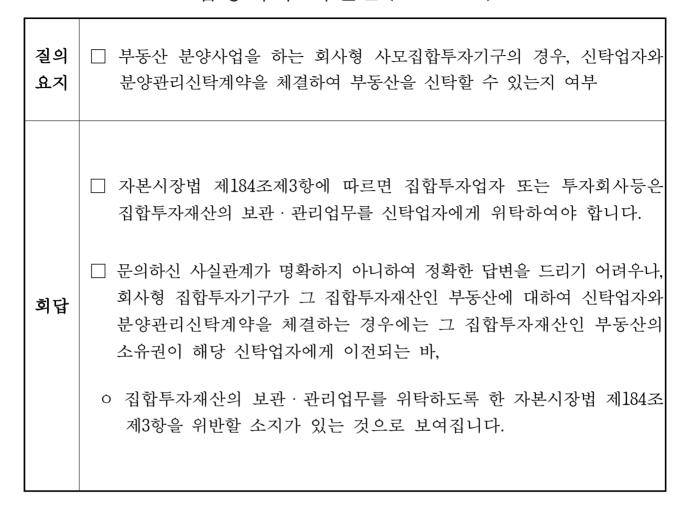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225)

질의 요지	 사모펀드에 대해 신용공여 또는 수탁업무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도 전담증개 업자만 가능한지 여부 레버리지 목적의 TRS는 신용공여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에 해당되는데도, 전담증 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수행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모펀드에 대해 신용공여 또는 수탁업무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 사모펀드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가능하고, 사모펀드에 대해 레버리지 목적의 TRS를 제공하는 행위도 경제적 실질이 신용공여와 유사하므로 해당 사모펀드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이유	 전담증개업무는 사모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사모펀드 운용의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및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는 전담증개업무 중 핵심업무에 해당하고, 레버리지 목적의 TRS도 경제적 실질이 신용공여와 유사하므로 해당 사모펀드와 전담증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전담증개계약 없이 레버리지 목적의 TRS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도 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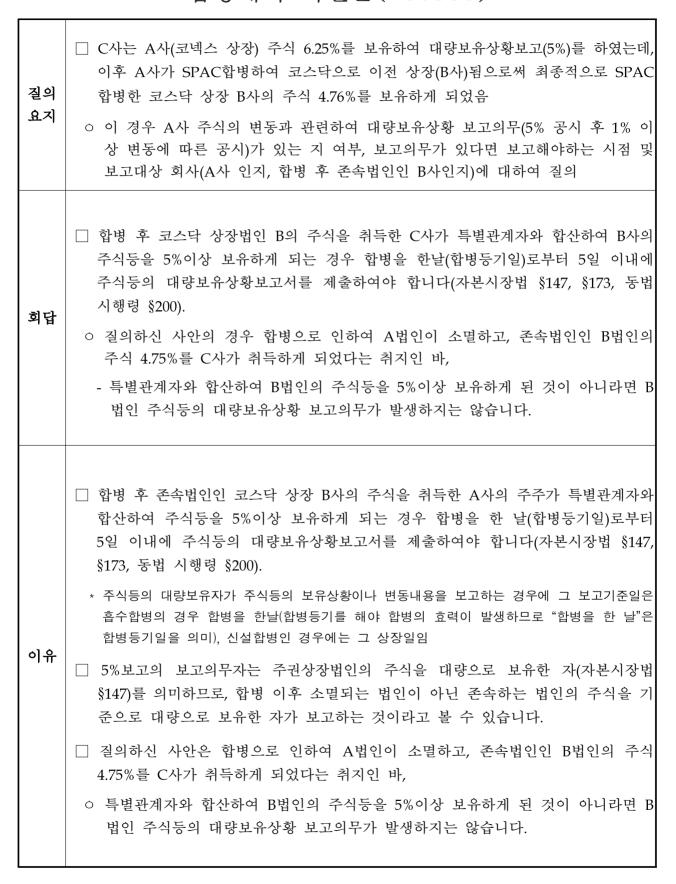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228)

질의 요지	□ 당사는 회사 분할로 인하여 2020년 1월 분할 신설된 상장법인*임 * 신설 당시 자산 1조원 이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가 2020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2020년에 분할 신설된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전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어 2020년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 외부감사법 제8조제6항 단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는 동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장법인의 전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20년에 분할 신설된 법인은 전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어 2020년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 2021년도는 2020년말 자산 총액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대상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외부감사법 >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 ⑤ 생략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한다.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96)



법령해석 회신문(200386)



금융혁신

법령해석 회신문(200268)

질의 요지	 □ 2020년 8월 27일 개정 예정인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시 은행통합형 P2P대출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으로 운영시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이 유효한지 여부
회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귀하가 설명한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의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건 P2P업체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하 "협약은행")로 하여금 대출(이하 "P2P대출")을 차입자에게 실행하게 하고, 협약은행은 본건 P2P업체가 모집한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P2P대출의 담보로서 수취합니다. (따라서 P2P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 협약은행은 P2P대출의 금리는 0%로 하며, 차입자들은 실제 P2P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자에게 담보이용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하 "은행통합형 P2P 대출" 방식) □ 아울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임을 안내 드립니다.
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연계대출계약의 심사・승인 및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제삼자에게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설명한 은행통합형 P2P방식의 운영은 불가합니다.

전자금융

법령해석 회신문(190351)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질의 요지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선불전자금융업자가 해당 피해자금의 송금·이체내역(거래내역)을 피해자에게 확인(이체확인증 등 발급)하여 주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제공한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역 확인정보(이체확인증 등)를 통해 자금의 송금·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주는 경우라면,
	*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또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요청
	○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의 계좌 가 사기이용계좌(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iv) 에 해당하는지 및 동 송금·이체액이 피해금(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v)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귀사가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A)로부터 선불전자금융업자의 법인계좌를 거쳐 금융회사 계좌(B)로 입금*되었고, ②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①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주며, ③피해자가 제출한 ②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①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면,
회답	* 법인계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포함
	○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A)로부터 금융회사 계좌(B)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해석) 보이스피싱을 통해 '실물계좌(A) → 가상계좌 → 실물계좌(B)' 로 간접적으로 입 금된 경우, 해당 입금계좌(B)를 사기이용계좌 로 본 바 있음(법령해석 170017 회신)
	○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 계좌(B)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 이며, 동 입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하며(「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제4호),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제5호)
	○ 이러한 사기이용계좌로의 피해금의 ' 송금·이체 '와 관련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별도로 정의하거나 특정 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송금· 이체의 개념 [*] 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통상 '송금(送金) : 돈을 부쳐 보냄, 이체(移替) : 어떤 계좌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김'으로 정의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A) 로부터 선불전자금융업자 의 법인계좌를 거쳐 금융회사 계좌(B)로 입금***되었고,
 - ②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① 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주며,
 - ③피해자가 제출한 ②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①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면,
 - * 법인계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포함
 -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A)로부터 금융회사 계좌(B)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관련 법령해석) 보이스피싱을 통해 '실물계좌(A) → 가상계좌 → 실물계좌(B)'로 **간접적으로 입** 금된 경우, 해당 **입금계좌(B)를 사기이용계좌**로 본 바 있음(법령해석 170017 회신)
- □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 계좌(B)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이며, 동 입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26)

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모바일 화면에 접속하여 본인의 심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이후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질의 1. 보험계약자가 심사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전자금융거래에 요지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약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안전성, 보안성, 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거래인증수단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란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 육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이용자가 금융회 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 화된 방식(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ㅇ 이러한 '자동화된 방식은 거래의 완결과정에서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회답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참조) □ 따라서,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고객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심사자가 고객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는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보험심 사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심사자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보험계약체결 여부를 결 정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란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 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이용자가 금융회 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 이유 화된 방식(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ㅇ 이러한 '자동화된 방식'은 거래의 완결과정에서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참조) □ 따라서, 귀사의 고객이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심사서류 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귀사의 보험심사자가 인수 여부를 심사하는 등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면 이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 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28)

	1.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ARS 업무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 10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34조 제3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2. 통신용 비밀번호를 '실명확인 절차'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당사는 ARS 사용을 등록하는 경우, 계좌원장 비밀번호와 별개로 통신용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고객의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하는 경우,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아, '실명확인 절차(고객이 직접 내방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통신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접근 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통신용 비밀번호 사용을 등록시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실명확인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령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귀사가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를 고객이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회답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통신용 비밀번호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0호다 목에 따른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해당 통신용 비밀번호가 접근매체에 해당하면「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2 항 및「전자금융감독규정」제34조 제3호에 따라 귀사가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발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실명확인 후 발급·교부하여 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각 목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유	* 제2조 제10호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 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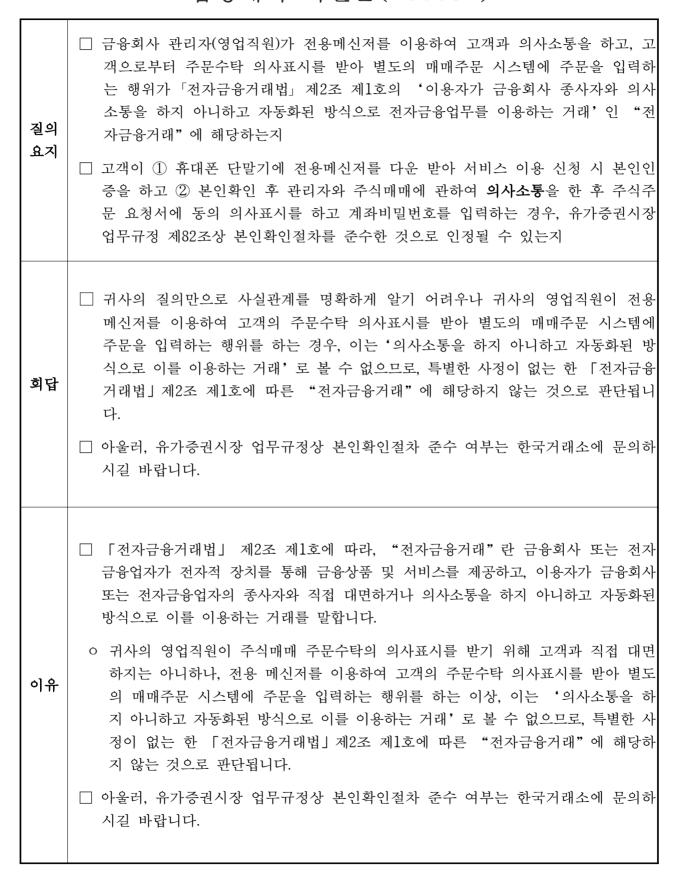
-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은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귀사가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를 고객이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 통신용 비밀번호는 '거래지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 하나의 절차'에 해당하거나 또는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용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한편, 귀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귀사가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발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실명확인 후 발급·교부하여야 하며, 기타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후 발급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30)

질의 요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중 "갖출 것"에 대한 적용범위 질의 - 상기 조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 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을 타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관련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수행을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답	 이 경우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라는 의미로서 전산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 사용대차 시설대여 및 위탁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전산설비를 위탁 활용 하는 경우에는 <u>관련 법령상 규정</u> 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규정:①「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업무위수탁 운영 기준 등의 보고), ②「전자금융거래법」§40,「전자금융감독규정」§60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수행을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의 요건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	□ 이 경우 ' 갖추다' 는 '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 라는 의미로서 전산설비 등을 직 접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보험업법」의 경우 허가의 요건으로 제6조에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규정하고,「보험업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입법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19.1월,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추진하면서 허가·등록의 물적 시설 세부요건 중 '보유'의 용어를 개별 금융업법상 물 적설비 요건과 동일하게 '갖출 것'으로 개정(「전자금융감독규정」§50①Ⅱ,Ⅳ)한 바 있습니다.

- o 따라서, 허가·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기기 등을 갖추는 방법에는 **임차, 사용대차,** 시설대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주사·계열사 등이 보유한 설비를 이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전산설비를 위탁 활용**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정** 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 '정보처리의 위탁'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등의 보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과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 전산설비 위탁 운영 등을 수행하는 상대방은
-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 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전자금융거래법」\$2V,「전자금융감독규정」\$3Ⅲ) 합니다.
-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령상 **외부주문 등에 관한 기준 등**(「전자금융거래법」§40,「전자금융감독규정」§60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외부주문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계약서, 계약서 부속자료 및 그 밖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자료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전자금융거래법」 \$40,「전자금융감독규정」\$61)합니다.
- □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VAN사업 등을 겸영하는 등 **전자금융업 이외의 다른 금융 관** 련 **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다른 금융업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예) 전자금융업자가 VAN사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신용카드 등 부가통 신업의 등록기준 등을 개별 검토하여 준수 필요(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5의2, 별표1의2)

법령해석 회신문(200031)



법령해석 회신문(200036)

질의 요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 하면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역시 위탁 한 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특히,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때, 위 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2호의 요건 중 위탁회사의 전산실의 범위에 클라우드 전산센터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전자금융거래법」제4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 한편, 금융회사 등이 제3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설비·기기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2호의 요건과 관련한 위탁회사인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의 범위에는 제3자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센터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제40조 제6항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재위탁 제한규정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로서(「전자금융거래법」 \$21의2④ 등), 방화벽 운용, 시스템 모니터링 등보안 인프라 운영과 취약점 분석평가, IT내부통제 관리 등의 업무를 포괄하며, - 정보의 외부유출 방지 등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통솔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제한하되, 단서규정을 두어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위탁을 허용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각 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위탁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채위탁이 가능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60④ I, II).

- I) 재수탁업자가 재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금융거래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의 개별적 지시에 따라야 하고,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는 변경된 정보가 지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 ii) 위탁업무와 관련된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는 "위탁회사의 전산실" 내에 둘 것 (다만, 재수탁업자가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알지 못하도록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처리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위탁회사의 관리·통제 하에 재수탁회사 등 제3의 장소로 이전 가능)
- □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2호의 **위탁회사의 "전산실"** 이라 함은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 전산자료 보관 및 출력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의미하고(「전자금융감독규정」 §2 I),
- 금융회사 등이 제3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 자금융거래법」제28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설비·기기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위탁회사인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의 범위에는 제3자인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 공자의 전산센터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체결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위·수탁 계약)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마련된 금융회사 등의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금융보안원,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가이드 64면 등 참조).
- 또한, 재위탁에 따른 **재수탁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 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 제40조 및 감독규정 제60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51)

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K-OTC) 외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 투자협회가 K-OTC 호가중개시스템 및 관련 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업무망 분 질의 리를 이미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 요지 스템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 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법 §1, 시행령 §2). ○ 한편,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망분리 의무는 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통신망** 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는 않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의미를** 밝히는 경우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 정 연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 규정은 대규모 금융전산사고 등을 배경으로 도입되었으며, 금융회사 등 의 내부망·시스템의 악성코드 유입 등을 방지하고, 외부로의 정보유출을 사 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회답 ● 따라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뿐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주되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전자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②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망과 분리·차 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도 서로 연계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은행연합회 등과 같은 이익단체적 성격을 가지면서,

 ○ 「자본시장과 금용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자율규제 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전자금용업무로서 주권의 장의매매에 관한 업무(K-OTC 운영, 자본시장법 286조 제1항 제5호) 등을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부수적으로 수행 중인 K-OTC운영 업무 등을 제외하면, 금용투자협회의 주된 업무의 성격이 전자금용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업무용시스템과 K-OTC운영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되는 등으로 인해 전자금용거래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정우라면, ○ 전자금용업무가 아닌 금용투자협회의 주된 업무를 치리하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하여까지 「전자금용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협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의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반에는 법 구체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하고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특정 금융회사 등에 안전성 확보의무 등 일부 조항의 점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이므로, ○ 전자금융업무(법 제2조 제1호 전단)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IT관련 사항을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업무 전반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가 접용됩니다. □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바, ○ 동 규정상의 망분리 의무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 수행 중인 K-OTC운영 업무 등을 제외하면, 금용투자협회의 주된 업무의 성격이 전자금융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업무용시스템과 K-OTC운영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되는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하여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협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에서 수범 주체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하고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특정 금융회사 등에 한해 안전성 확보의무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이므로, ○ 전자금융업무법 제2조 제1호 전단)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관련 사항을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업무 전반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바, ○ 동 규정상의 망분리 의무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된다고 한 것입니다. □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		호 등에 따른 자율규제 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전자금융업무로서 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K-OTC 운영, 자본시장법 286조 제1항 제5호) 등을 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되는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하여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협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 제3호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에서 수범 주체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하고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특정 금융회사 등에 한해 안전성 확보의무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이므로, ○ 전자금융업무법 제2조 제1호 전단)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IT관련 사항을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업무 전반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바, ○ 동 규정상의 망분리 의무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 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도 모두 적용(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된다고 할 것입니다.		로 수행 중인 K-OTC운영 업무 등을 제외하면,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의 성
지스템에 대하여까지「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협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 제3호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에서 수범 주체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하고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특정 금융회사 등에 한해 안전성 확보의무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이므로, ○ 전자금융업무(법 제2조 제1호 전단)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IT관련 사항을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업무 전반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 또한,「전자금융감독규정」은 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바, ○ 동 규정상의 망분리 의무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도 모두 적용(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 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 되는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 제3호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에서 수범 주체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하고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특정 금융회사 등에 한해 안전성 확보의무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이므로, ○ 전자금융업무(법 제2조 제1호 전단)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IT관련 사항을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업무 전반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 또한,「전자금융감독규정」은 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확보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바, ○ 동 규정상의 망분리 의무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도 대성으로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		시스템에 대하여까지「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에서 수범 주체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하고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특정 금융회사 등에 한해 안전성 확보의무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이므로, ○ 전자금융업무(법 제2조 제1호 전단)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IT관련 사항을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업무 전반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 또한,「전자금융감독규정」은 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확보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바, ○ 동 규정상의 망분리 의무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도 모두 적용(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에서 수범 주체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하고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특정 금융회사 등에 한해 안전성 확보의무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이므로, ○ 전자금융업무(법 제2조 제1호 전단)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IT관련 사항을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업무 전반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 또한,「전자금융감독규정」은 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확보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바, ○ 동 규정상의 망분리 의무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도 모두 적용(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특정 금융회사 등에 한해 안전성 확보의무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이므로, ○ 전자금융업무(법 제2조 제1호 전단)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IT관련 사항을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업무 전반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확보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바, ○ 동 규정상의 망분리 의무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도모두 적용(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가정		1.「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 제3호의 의미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업무 전반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 또한,「전자금융감독규정」은 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바, ○ 동 규정상의 망분리 의무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도 모두 적용(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특정 금융회사 등에
 □ 또한,「전자금융감독규정」은 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확보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바, ○ 동 규정상의 망분리 의무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도모두 적용(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 	이유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업무 전반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 확보의무
 스템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도 모두 적용(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 		
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 "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		스템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도
		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 "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

- 그런데, 동 조항을 문언적 의미만을 기초로 예외 없이 해석·적용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일부 전자금융업자 등은 전자금 융업의 수행과 무관한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 부문에까지 망분리의 적용 범위 가 제한없이 확장되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므로, 동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입법취지·목적,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판결)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는 '13. 3. 20. 발생한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고*를 배경으로 '공공부문'의 망분리 제도를 '금융분야'에 도입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 * 농협·신한·제주은행 및 KBS·MBC·YTN의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 상당수의 PC가 마비, 정보유출· 자료파괴 사고가 발생
 - 아 '13년에 금융회사 등의 망분리를 의무화한 이후, '15년에는 업무상 대외 기관과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있어 정보유출 방지 대책 등을 갖출 것을 바 탕으로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망분리 부담을 일부 경감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입법배경·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동 규정은 금융회사 등의 내부망·시스템의 악성코드 유입 등을 방지하고, 외부로의 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법 §21①, ②)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 이는 금융회사 등의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금융업이나 전자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법 제1조 내지 제3조).
- □ 위와 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문언의 통상적 의미, 입법취지와 목적, 제·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본다면,
 - ①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전자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고,

- ②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망과 분리·차** 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①**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도 서로 연계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과 관련한 금융투자협회 업무의 특수성
- □ 원칙적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 15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해** 당합니다(법 제1조).
 - 그런데, 금융투자협회는 기본적으로 **은행연합회 등**과 같은 이익단체적 성격을 가지면서, 자본시장법 제286조에 근거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의** 자율조정, 자율규제업무(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연수업무(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6호) 등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특별하게 **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K-OTC 운영, (자본시장법 제286 조 제1항 제5호)를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금융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일부 전자금융업자** 등과는 달리
 - 그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금융업이나 전자금융업무의 수행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업무가 법정화된 단체로서 그 주된 업무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금융회사와는 다른 특징 이 있습니다.
- □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부 수적으로 수행 중인 K-OTC운영 업무 등을 제외한,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은 '전자금융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업무용시스템과 K-OTC** 운영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되는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 * K-OTC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K-OTC 호가중개시스템")과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간의 망분리 및 K-OTC 호가중개시스템과 외부통신망간의 물리적 망분리를 완료하는 등 해당 시스템을 운용하 는 임직원·부서에 대한 망분리 체계 유지 등
-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업무용 시 스템에 대하여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 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협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56)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 의 범위에 과거 사용했던 모든 비밀번 호가 포함되는지 여부
	1. 당행은 이용자가 계좌비밀번호 변경 시 과거에 사용했던 모든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못하게 방지 하는 장치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음
질의 요지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밀번호 변경 시 같은 번호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을 준수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당행은 해당 규정의 "같은 번호" 를 "직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 로 한정하여, 이용자가 계좌비밀번호 변경 시 과거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라도 직전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이용자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금융회사 등이 갖추어야 할 이용자 보호제도 및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답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에서는 비밀번호의 재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같은 번호"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규정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 등이「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35조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는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번호 관리보호 체계, 이용자 보호제도 등 자체 환경에 맞추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재사용이 금지되는 "같은 번호"의 범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는 이용자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임관계에 기반하는 전자금 융거래계약의 위임(「민법」제681조) 계약적 성격에 근거하여
	 제1항에서 이용자 정보 관리 등을 비롯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유	 한편, 제2항에서는 이러한 선관주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금융보안(Cyber security)을 강화하도록 하 면서, 전자금융업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따른 선관주의 및 안전성 확보 의무를 구체화 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 유의사항을 공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각 호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갖추어야 할 이용자 보호제도** 및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 등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같은 번호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항).
- □ 이 경우, 비밀번호의 재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같은 번호"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규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 금융회사 등은「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35조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 비밀번호 관리보호 체계, 이용자 보호제도 등을 고려 하여 재사용이 금지되는 "같은 번호"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합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와 관련한 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경우라면 직전 비밀번호에 대하여 재사용을 금지하는 관리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97)

API를 통하여 당행과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앱 및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및 금융상품 소개 등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로서 추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목표로 하는 업체) 사이에 금융거래정보를 송수신함에 있어, 은행이㈜레이니스트의 고객에 부여하는 보안토큰이 접근매체인지 여부

상기 보안토큰의 작동 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① ㈜레이니스트의 고객이 ㈜레이니스트의 앱인 뱅크샐러드를 통해 은행에 있는 자기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뱅크샐러드 앱이 은행 API를 호출하며, 은행이 휴대 폰 본인확인과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고객 본인확인을 거친 후 고객으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획득하고, 고객에게 보안토큰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의 요지

- ② 발급되는 보안토큰은 ㈜레이니스트의 뱅크샐러드 서버에 보관되며, 고객은 보안토 큰을 발급받으면서, 보안토큰의 역할과 유효기간(3개월 이내) 및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고지 받습니다.
- ③ 고객이 뱅크샐러드 앱에서 은행에 보관된 자기정보를 요청하였을 시점에 보안토큰 이 은행에 전자적 방법으로 함께 전송되며, 은행은 보안토큰의 유효성 등을 확인하고 ㈜레이니스트에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합니다.
- 상술한 보안토큰의 구현 방식이 은행의 은행 고객에 대한 접근매체 발급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을 요청
-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레이니스트에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안전하 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토큰을 발급하면서,
 - o 귀사가 발급하려는 보안토큰은 정보주체의 금융거래정보를 ㈜레이니스트 등 제3자에 게 API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의 하나로서, 제3자가 귀사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인지를 검증하고, 귀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등에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로만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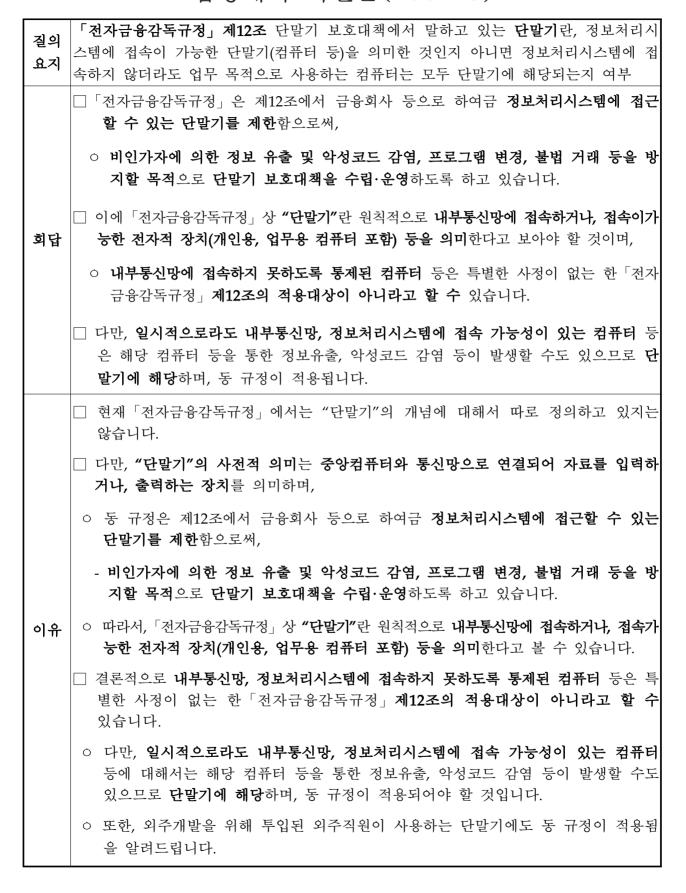
회답

- 따라서, 귀사가 ㈜레이니스트의 고객에게 발급(다만, ㈜레이니스트의 서버에 보관 하여 관리)하는 보안토큰이 귀사와 고객 간, 귀사와 ㈜레이니스트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것이 아닌 귀사가 보유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레이니스트에 단순 제공하 기 위해 ㈜레이니스트에 보관・관리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보안 토큰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 □ 다만, 귀사가 보안토큰을 API를 이용하는 ㈜레이니스트에 대해 검증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안토큰을 고객에게 직접 발급하고, 고객이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 고객으로부터 보안토큰을 제공받아 검증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보안토큰을 지배적으로 관리하며 보안토큰을 통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레이니스트에 API를 통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토 큰을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사가 발급하려는 보안토큰은 정보주체의 금융거래정보를 ㈜레이니스트 등 제3 자에게 API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의 하나로서, 제3자가 귀사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인지를 검증하고, 귀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등에접근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로만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 *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 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
 - 따라서, 귀사가 발행하는 보안토큰이 귀사와 고객 간, 귀사와 ㈜레이니스트간 전 자금융거래를 위한 것이 아닌 귀사가 보유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레이 니스트에 단순 제공하기 위해 ㈜레이니스트에 보관·관리되는 것이라면, ㈜레 이니스트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해당 보안토큰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 *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 다만, 귀사가 보안토큰을 API를 이용하는 ㈜레이니스트를 검증 등의 목적이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 발급하고, 고객이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 고객으로부터 보안토큰을 제공받아 검증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보안토큰을 지배적으로 관리하며 보안토큰을 통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

법령해석 회신문(200113)



법령해석 회신문(200119)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오픈마켓 이용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로부터 신선식품, 가공식품, 식자재,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이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가 판매하는 개별 상품의 종류 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입점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도매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상,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도매및 상품 중개업' 1개 업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당사 오픈마켓에는 신선식품, 가공식품, 식자재,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도매 형태로 판매하는 도매업체가 입점할 예정이며, 당사 회원인 사업자는 오픈마켓 상에서 당사가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입점업체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당사는 (i) 생산자,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질의 요지

당사 오픈마켓에는 신선식품, 가공식품, 식자재,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도매 형태로 판매하는 도매업체가 입점할 예정이며, 당사 회원인 사업자는 오픈마켓 상에서 당사가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입점업체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당사는 (i) 생산자,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당사 회원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업체만을 오픈마켓에 입점시키거나, (ii) 입점업체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이외에 '식료품 제조업'(즉, 식료품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도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입점업체와의 입점 계약 등을 통해 입점업체가 직접 제조한 상품을 제외한 도매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회답

-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발행하는 전 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의 1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이라면, 소관 부처인 통계청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귀사의 오픈마켓 이용자가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 해당하는 재화 및 용역의 구입에만 이용되는 경우,
 - 상기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 업분류 중분류상 1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이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의 1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통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47)

질의 요지	당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통장비밀번호 만으로 이체가 가능한 간편이체 서비 스를 구상중입니다. 이에 통장비밀번호가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 된 접근매체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귀사가 발급하는 통장 비밀번호는 해당 통장의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금 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자금이체 등)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를 이 용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답	□ 귀사가「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로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2항 및「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확인 후 교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통장 비밀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 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0호에 따라,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수단 또는 정보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 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 한 비밀번호' 등이 있습니다.
	 귀사가 발급하는 통장 비밀번호는 해당 통장의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금 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자금이체 등)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를 이 용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한편, 해약환급금 입금용 통장 등 단순 입출금을 위해 발급되는 통장 및 통장비밀 번호는「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2항 및「전자금융감독규정」제34조 제3호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실명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로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명확인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통장 비밀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 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9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화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인증 수단인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금융회사의 기등록고객의 경우 본인확인 방법으로써 핸드폰을 이용한 확인방식을 요지 사설인증 수단인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확인이 확인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이러한 인증방법은 회사에 기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고객(이용자)이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 시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 는 방법"에 따라, 귀사에 기 등록된 고객의 본인명의 전화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조치 회답 를 하는 경우. ㅇ 구체적인 인증 방식과 관련하여 귀사는 안전한 본인확인수단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이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4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대출신청, 가입한 저 축성 예금·적금·부금 등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등)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1호에서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 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유 인증수단은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는, 금융회사가 다른 법령상의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에 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고객 본인이 실제로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점 검하도록 하고자 하는 한편, - 특정한 인증수단의 열거 없이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안전한 본인확인 수단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귀사에 기 등록된 고객의 본인명의 전화번 호를 통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인증 방식과 관련하여 귀사는 안전한 본인확인수단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이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러한 본인확인조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를 갈음하는 것은 아니며
 ○ 해당 법령상 제도 취지에 비추어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조치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15)

질의 요지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해 익명처리를 하여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면, 이와 같이 익명처리된 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에는 ^①「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②신용 정보가 아닌「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③그 밖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기타 금융거래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① 첫째, 신용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신용정보법」의 파기에 관한 조항을 준수 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제2항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 신용정보의 경우「신용정보법」제2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 등 파기 조치를 이행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파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둘째, 개인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제2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파기 절차와 방법이 준용됩니다.

회답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u>익명처리 등을 한 경우</u>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파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③ 셋째,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기록, 전자금 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할 수 있는 로그 기록 등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한다면 파기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 거나 오류 발생시 이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기록(법 §22①)을 의미하므로,
-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할 수 없고, 오류 발생시에도 이를 확인·정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u>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u>
- ⇒ 따라서, (i) 신용정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경우 「신용정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파기절차·방법에 따라 익명조치 등을 하고, (ii) 그 외 전자금융거래기 록은 추적·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파기의무를 준수하였거나, 파기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시 이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기록(법 §22①)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전자금융거래기록'에는 ^①「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②신용정보에 이르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③그 밖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기타 금융거래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우선, 신용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신용정보법」의 파기에 관한 사항에 따라 파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른 익명처리(「신용정보법」 제2조제17호) 등 파기 조치(신용정보법 제20조의2 관련) 등을 이행하면「전자금융거 래법」에 따른 파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제2항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요컨대,「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파기대상**은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¹⁾개인정 보,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¹¹⁾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기록, 기타 전자금 융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할 수 있는 로그기록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법 §3①).

이유

-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i)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ii)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하고, iii)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즉, 전자금융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런데,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금의 융통과 관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일반을 의미한다고 보아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 자산보유 또는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도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실무해석 관행이 확인됩니다(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2017년 참조). 이러한 실무해석 관행이 일반적·보편적인 법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판결 등 참조)
- 먼저, "금융상품"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2021.9월

시행 예정)」에 따른 "금융상품"이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등을 의미하고,「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하며, 「보험업법」도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상품의 통상적 의미에는 계약이라는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금융상품의 계약적 요소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자금융업무 처리 과정에는 그 계약당사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비대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 상, 계약당사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접근매체"에 대해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는 점(법 제2조제10호)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전자금융업무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 거래내역 등에 관한 신용정보, 거래지시등에 관한 전자금융거래기록 등 다양한 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에는 금융상품의 제공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일체의 정보 처리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금융분야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 입니다(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2017년 참조).
 - 따라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에 대해서도 「전자금융 거래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법§22③, 시행령§12⑤).
 -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제4항은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개인정 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하 고,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제1항**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데이터가 복원

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자가 제시하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개인정 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하여 **결과적으로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개인정보는 파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4.2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민원회신 관련).
- 따라서, 개인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익명 조치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파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끝으로,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전자금융거래기록,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기록, 전자금융거래 내용을 추적·검색할 수 있는 로그 기록 등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한다면 파기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 색하거나 오류 발생시 이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기록(법 §22①)을 의미하므로,
 -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할 수 없고, 오류 발생시에도 이를 확인·정정 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파기의 대 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73)

통상적으로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여 스마트뱅킹을 신청할 경우 창구에 비치된 핀패드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임시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이후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이 설정한 이용자ID와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 스마트뱅킹 정식 비밀번호를 지정하도록 함

* 해당 스마트 뱅킹 시스템에서는 이용자 ID 및 임시비밀번호 입력시에는 최초 비밀번호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비밀번호의 등록절차까지만 진행될 뿐, 해당 시스템을 통한 고객정보의 조회 등을 위해서는 등록한 최초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할 뿐만아니라, 송금·이체 등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ARS 등 추가인증이 필요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이용자ID와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식비밀번호를 등록하였다면,

질의 요지

- 1) 이와 같은 스마트뱅킹 이용 전의 정보처리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3)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의4에서 정한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4)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식비밀번호를 등록하도록 스마트뱅킹 시스템을 운영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제37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한 안전한 인증방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 □ 첫째,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의 자금의 융통, 송금·자금이체 등 지급거래,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의 제공 자체에 한정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개인정보·신용정보·전자금융거래기록 등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법개념으로 해석됩니다.
 -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도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이 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둘째,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므로(법 제3조제1항),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해서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금융 분야의 사이 버보안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 셋째,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영업점 직원 등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임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의4제1호에서 정하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자금융기반시설"의 개념요소로서 전자금융거래에는 금융상품의 제공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일체의 정보처리업무가 포함되므로, 전자금융기반시설 또한 자금의 융통, 송금·자금이체 등 금융상품의 제공업무에 관한 정보처리시스템 부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고객은 은행과 그 영업점에서 스마트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전자금 융거래계약(법 제2조제7호 참조)을 체결하였고, 그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은 행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용자ID와 고객이 영업점에서 직접 등록한 임시비밀 번호를 통해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 정보처리시스템 부분에서는 송금·이체 등 금융상품의 제공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 도 최초 비밀번호 등록행위를 통해 스마트뱅킹 서비스라는 '금융상품의 제공업 무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전자금 융기반시설에 접근"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끝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행위가「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의4제1호에서 정하는 '데이터의 조작'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 등에 해당하는지 및 은 행 영업점 직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스템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해당 은행 및 관련 임직원들이 같은 법 제21조제2항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의미
- □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i)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ii)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전자금융업무")하고, iii)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 이 경우, 질의하신 해당 스마트뱅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의 개념중 i)·iii)의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은 명백하지만 그 시스템에서 ii)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즉 전자금융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런데,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금의 융통과 관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 관련상품 및 서비스 일반을 의미한다고 보아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 자산보유또는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도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실무해석관행이 확인됩니다(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해설', 2017년참조). 이러한 실무 해석관행이 일반적·보편적인 법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언의 통상적인의미에 충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 먼저, "금융상품"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2021.9월 시행예정)」에 따른 "금융상품"이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등을 의미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 특정시점에 금전,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하며, 「보험업」도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발생에관하여 금전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상품의 통상적 의미에는 계약이라는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금융상품의 계약적 요소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자금융업무 처리 과정에는 그 계약당사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비대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 상, 계약당사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전자적으로 이

이유

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접근매체"에 대해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는 점(법 제2조제10호)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전자금융업무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 거래내역 등에 관한 신용정보, 거래지시 등에 관한 전자금융거래기록 등 다양한 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 역시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 거나** 이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전자금융거래'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과「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
- □ 그런데,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법 제1조)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취 지상, 전자금융업무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그 시스템에서 보유·처리 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보장하고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보안(Cyber security: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법 제32조 등 참조)에 관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함 과 동시에 이러한 선관주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고 있으며(법 제21조제 1항 및 제2항),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 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법 제22조) 하도 록 하는 등 금융보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의 자금의 융통, 송금·자금이체 등 지급거래,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 어지는 '금융상품'의 제공 자체에 한정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개인정보·신용정보·전자금융거래기록 등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법개념으로 해석됩니다.

-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므로(법 제3조제1항),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의처리 및 보호에 대해서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금융 분야의사이버보안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됩니다(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2017년 참조). 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다수의 특칙 규정(제21의4제1호, 제26조 등)을 두고 있는바, 일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특칙 규정의 적용·포섭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해당 규정(제59조제3호, 제18조제1항 등)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전자금융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수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한다는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회사등과 고객 간에 비대 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업무의 특성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도 고도의 자율성·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는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정보 처리의 안전성・신뢰성을 사전에 확보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등에 강력한 접근권한 통제, 직무분리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법 제21조제2항), 이러한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그 임직원에 대한 신분제재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법 제39조제6항, 제51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금융보안에 관한 특별한 규율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3.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우선,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21호)
- 이 경우, 해당 스마트뱅킹 시스템 중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절차를 구현하는 부분도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해당 시스템 부분까지만 접근하는 것으로는 송금·이체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즉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의미를 먼저확인하여야 합니다.

-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금융기반시설의 개념요소로서 전자금융거래에는 금융상품의 제공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일체의 정보 처리 업무가 포함되므로, 전자금융기반시설 또한 자금의 융통, 송금·자금이체 등 금융상품의 제공 업무에 관한 정보처리시스템 부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부분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한다면, 고객은 은행과 그 영업점에서 스마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전자금융거래계약(법 제2조제7호 참조)을 체결하 였고, 그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용자ID 와 고 객이 영업점에서 직접 등록한 임시 비밀번호를 통해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고객의 이용자ID 와 임시비밀번호를 알게 된 은행의 영업점 직원이 이를 이용 하여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행 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 정보처리시스템 부분에서는 송금·이체 등 금융상품 의 제공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초 비밀번호의 등록 행위를 통해 스마트뱅킹 서비스라는 '금융상품의 제공 업무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 는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4.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 관련
- □ 다만, 질의하신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제1호에서 정하는 '데이터의 조작'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 등에 해당하는지 및 은행의 영업점 직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스템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해당 은행 및 관련 임직원들이 같은 법 제21조제2항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87)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상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인 「전자금융감독규정」제51조제1한 및 제2항에 따라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은 본항에서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일시보관금" 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만약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전자금융 질의 업에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부채비율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재무건전성 요건충 요지 족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일시보 관금이 본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 "일시 보관금"에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 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도 포함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 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 회답 법으로 저장되어 송금·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사는 전자금융업 등록 시 충족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한도를 산정할 시 부채총액에 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 업무에 따른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 는 금액(이하 "미정산 잔액")에, ㅇ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도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제51조제1항 및 제2항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을 일정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전자지급결제대행·결 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이하 "미정산 잔액")'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하 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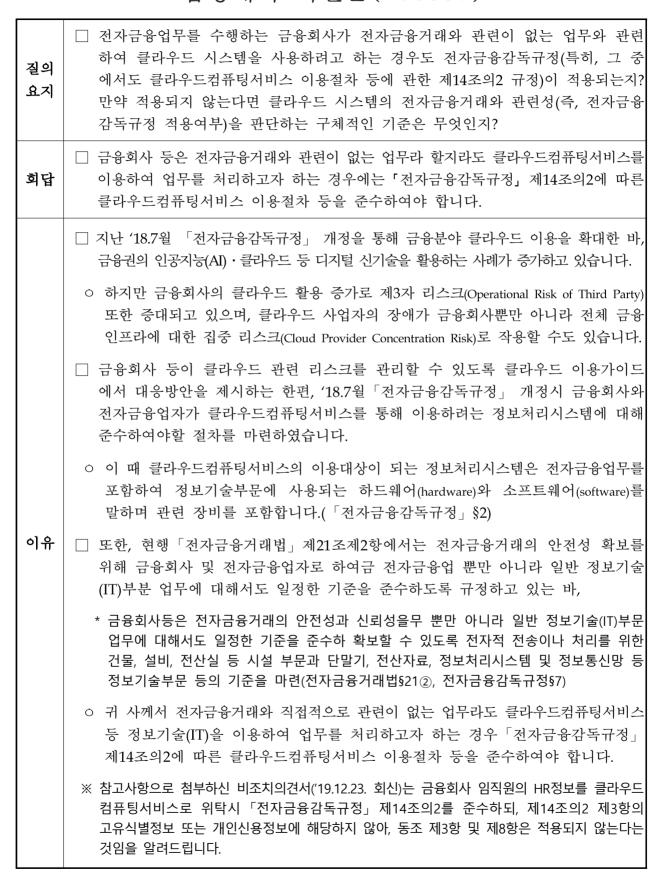
-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 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 법으로 저장되어 송금·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 명시적으로「전자금융감독규정」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관련하여 소액 해외송금업무를 예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전자자금이체·전자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통신과금서비스 <u>등</u>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여 미정산 잔액 차감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시적 규정이라는 점,

외국환거래법령상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시 부채총액에서 일시보관금을 차감하여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한도를 산정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미정산 잔액"과 동일한 성격의 송금·결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은 「전자금융감독규정」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 액"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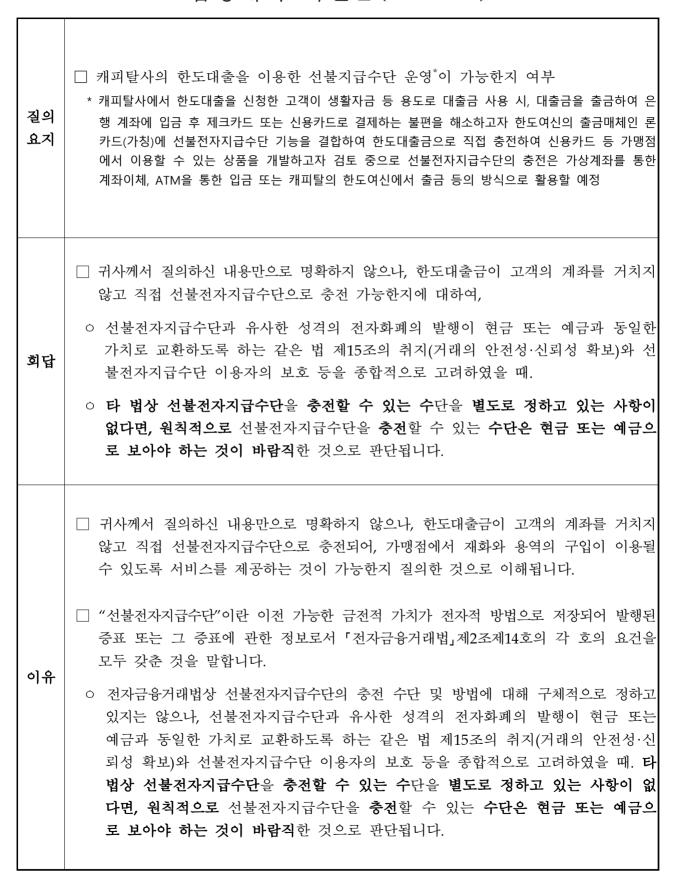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337)



법령해석 회신문(200338)

질의 요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2019. 1. 1.시행) 시행일 이전에 개정전 전자금융감독규정(2016. 10. 5.시행)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보고서 금감원 제출 등)를 거쳐 사용중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이 2019. 1. 1.이후에 갱신(재계약)되는 경우(한편, 대상 클라우드 시스템은 동일함),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 2에 따른 개정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즉, 신설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평가,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준수등)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귀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자체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을 '18.12월 개정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 정보·고유식별정보를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충족한 국내소재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클라우드의 내부통제 강화 및 보고의무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19.1.1. 시행) 시행일 이전에 귀사가 개정 전 「전자금융감독규정」('16.10.5. 시행)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 이용 중이라 하더라도, 귀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19.1.1. 이후에 해당 사와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에 따라 귀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부칙 제2조는 시행일('19.1.1.) 이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 제14조의2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 당시 유지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은 현행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적용되지 아니하나, 시행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62)



신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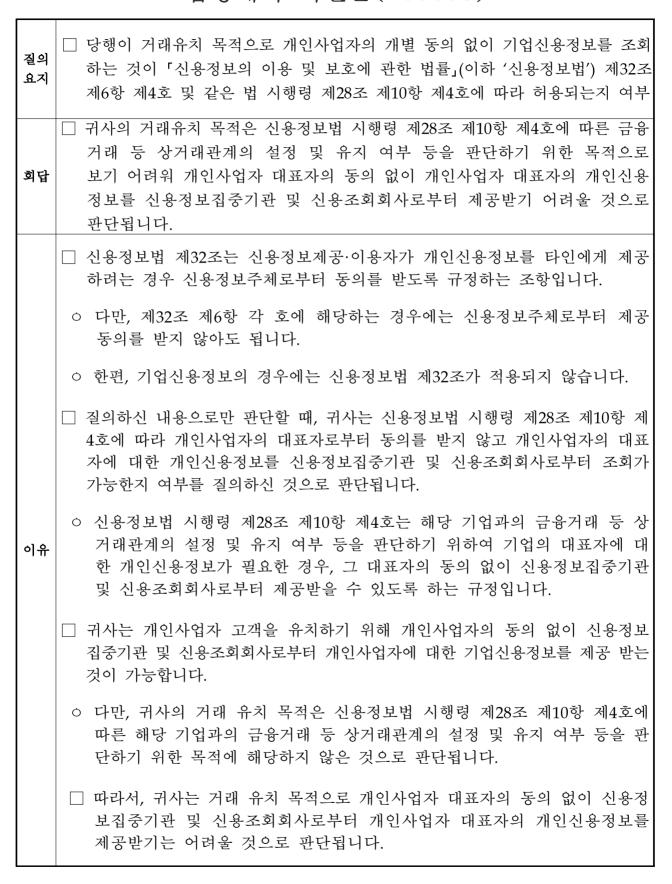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190372)

질의 요지	□ 법원의 면책결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회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법령에 대한 먼책결정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인 경우 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은 해당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무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03)

질의 요지	□ 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관련된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인 정보주체로부터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 제공하려는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의 위탁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05)



법령해석 회신문(200047)

질의 요지	 동시에 처리되는 여러 건의 대출신청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대출 건별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출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객이 추가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대출심사를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추가 대출 신청 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추가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① 여러 건의 대출이 동시에 처리된다 하더라도 대출마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목적, 조회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등이 다른 경우, 대출 건별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마찬가지로, 대출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신용정보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 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 받으려는 자는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을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	 □ 귀사는 고객의 대출신청 요청에 따라 대출심사, 대출실행 시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고객이 여러 건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대출마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조회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등이 다른 경우, 대출 건별로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각각의 대출 신청 건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은 경우, 각 대출 신청 건에 대해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② 마찬가지로, 대출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신용정보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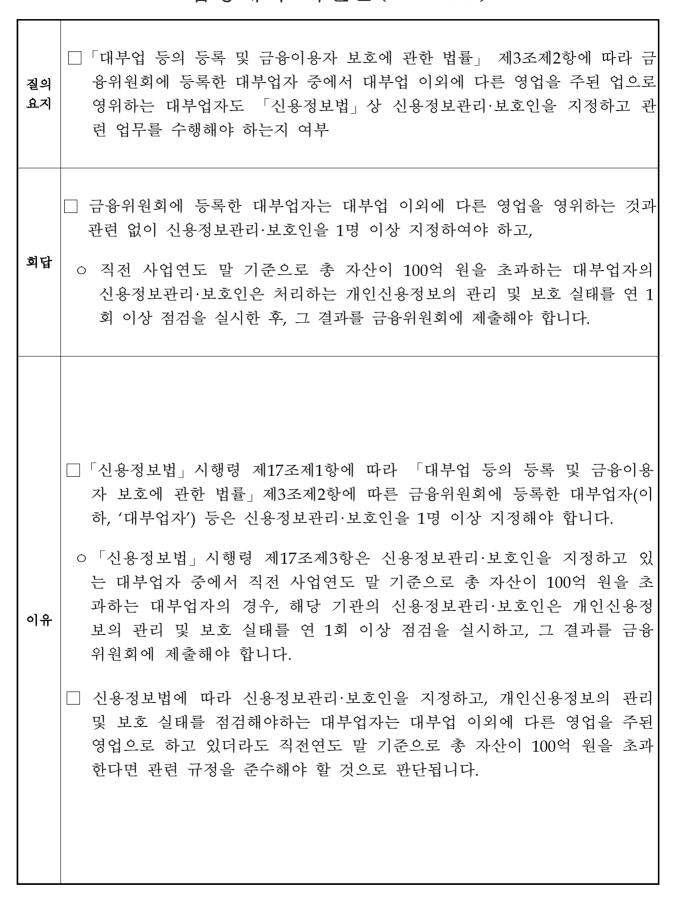
질의 요지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대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동의일로부터 2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 발송 후 고객이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마케팅 동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희답	 □ 전화는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전자적 매체나 방식에 해당되므로 전화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전 송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됩니다. ○ 해당 행위가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사항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전화는 「신용정보법」제40조 제7호 및 「신용정보법」시행령 제34조의3 제1호에 따라 전자적 매체나 방식에 해당하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가 적용됩니다. ○ 현행「신용정보법」은 제20조의2 제2항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의 유효기간,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행 「신용정보법」제40조 제7호가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 8. 5. 시행예정인 개정 「신용정보법」제40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가 준용됩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따라 전자 적 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58)

질의 요지	□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시, 강화된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해 신분증 이미지 내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금융회사 보유 DB와 비교·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정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신분증에 있는 사진 정보의 특징을 추출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신용정보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성명, 연락처, 개인식별번호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질의하신 바에 따르면, 귀사가 처리하려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 정보의특징을 추출한 정보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해당하지만「신용정보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지 않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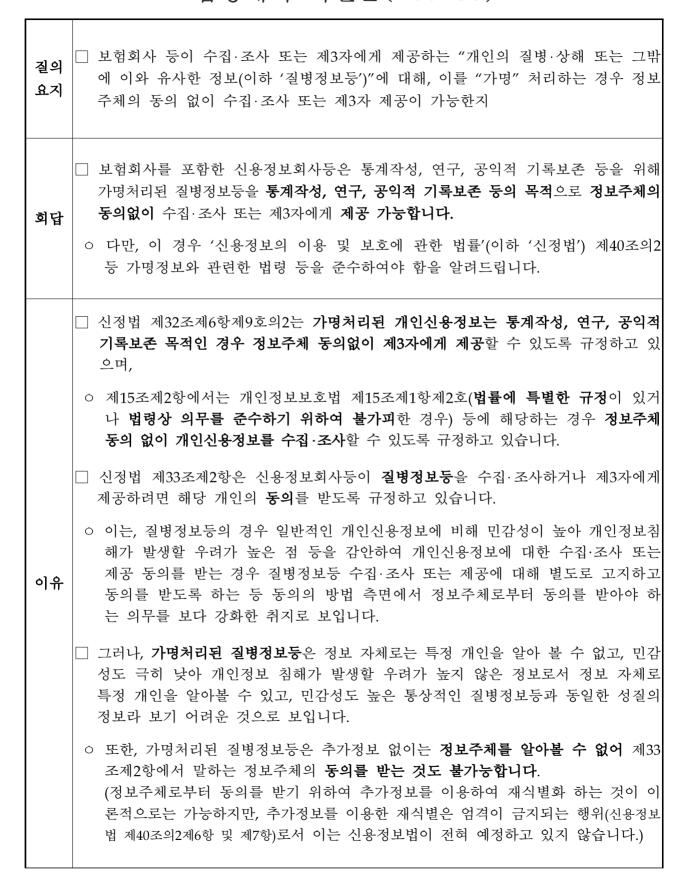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198)



법령해석 회신문(20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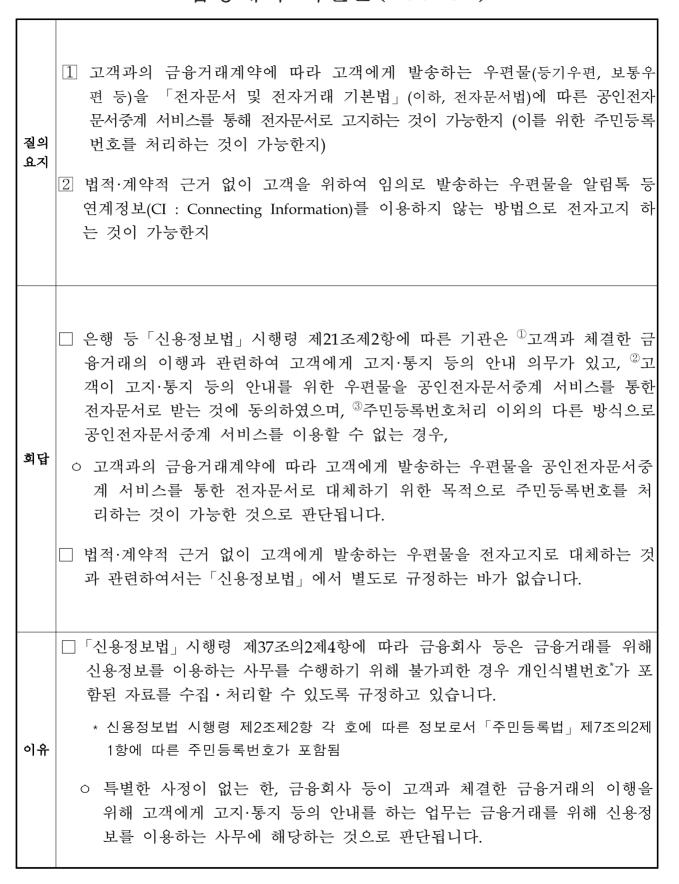
	□ 금융회사(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 정보(전산이력)가
질의 요지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 가 열람 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인지?
	②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로 고객이 열람할 수 없는 정보(신용정보업감독 규정 제20조 근거)인지?
회답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질의주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고객 업무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정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유	□ 「신용정보법」제35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이용 및 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 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용정보 주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질의주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고객 업무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정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58)



- □ 따라서,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의 경우 일반적인 질병정보등을 상정하여 규정된 제33조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정법 제32조 및 제15조에 따른 **가명정보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한편, 신정법 제32조 및 제15조의 정보주체 동의 예외 규정은 정보처리 위탁, 법원 의 제출 명령, 과세자료 제공, 가명정보 제공 등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인 정보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의 경우에도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인정보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제32조 및 제15조에 따른 예외 규정 마련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62)



- 다만, 고객에게 고지·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모든 방식(우편물 등)이 주민 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 따라서, ^①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고, ^②고객이 고지·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 ^③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발생하는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이 없다면, 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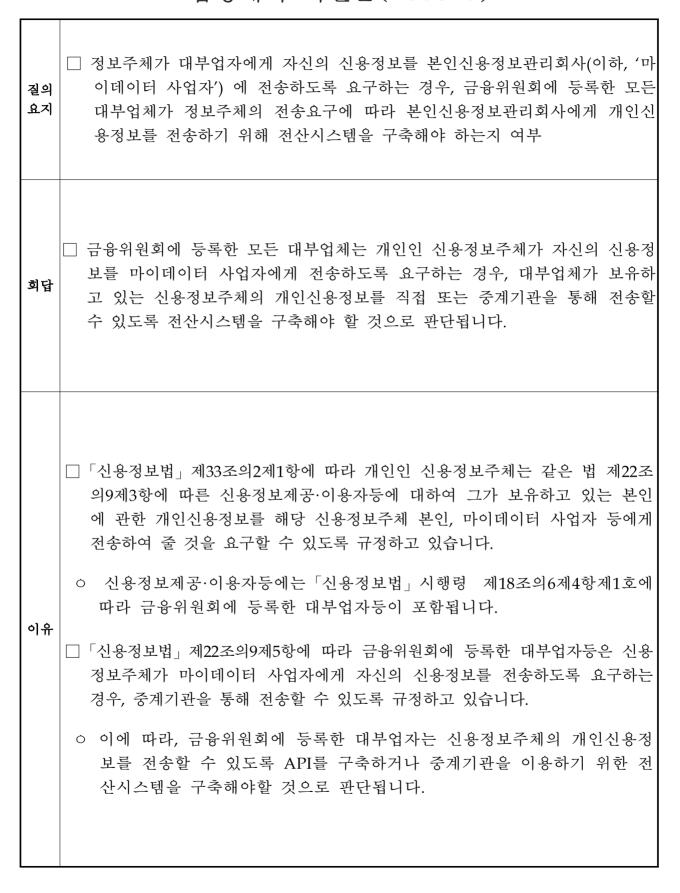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283)

질의 요지	□ 손해보험계약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만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당사 및 외부의 기관/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가 보험금의 청구·지급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유	 □「신용정보법」제2조제1호의3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됩니다. □ 질의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가 손해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을 위해 수집하고 처리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94)

질의 요지	□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8.5.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 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신용조사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20.8.5.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이유	 □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는 동 법 시행 전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법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회사는 신고 수리된 범위 내에서 신용 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부칙 제6조의 취지는 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정보업 허가단위가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기존 신용정보회사들의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에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합입니다. ○ 반면,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의 경우 법 개정에 따른 허가단위 및 허가대상업무에 변화가 없음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없이도 기존의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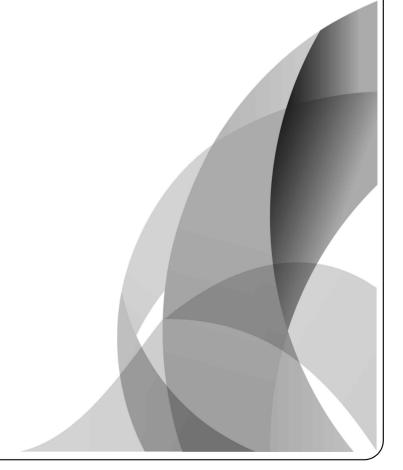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00342)

질의요지	o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전자금융업자인 A사는 보유 중인 개인신용평가모형을 B은행에 판매함과 동시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해당 개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B은행에 A사가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다만, B은행은 A사가 제공한 정보 외에 다른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며, A사는 B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산출에 개입하거나, 평가 결과를 제공받지않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개인신용평가결과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회답	o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판매하는 행위 및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신용평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으로서, ○ 개인신용평가 및 신용평가결과의 제공이 없는 단순 신용평가모형의 판매 행위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 또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B은행이 A사가 제공한 신용평가모형 및 신용정보만을 활용하여 개인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등 회사가 사실상 은행에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가 필요하며,
	○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제공대 상 기업(B은행)과 제공대상 정보, 제공되는 정보가 해당 기업(B은행)의 개인신 용평가에 활용된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내용을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코로나19 대응관련 발송 공문 등 "금융규제민원포털" 미등재)



법령해석 회신문

질의요지	□ 내부등급법 적용 국내은행(은행지주사회사 포함, 이하 동일) 등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20.3.23.)'에 따라 증시안정펀드(하위펀드 포함, 이하 동일)에 출자하고 동 펀드의 자산으로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출시 증시안정펀드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
회답	 □ 증시안정펀드가 주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에 투자되며, 정부가 세제지원 등을 통해 동 펀드에 출자하는 은행의 투자 금액을 보조하는 경우 ○ 동 펀드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상장주식)에 대해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 증시안정펀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어,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등을 통해 보조하고, 정부 감독하에 운영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 내부등급법 적용은행도 동 펀드가 보유한 기초자산(상장주식)에 대한 신용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근거 규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134조 바.(2))

< 예대율 5%p 이내 한시적 적용유예 >

(금융위 → 금감원, 2020.4.29.)

제목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관련 안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4.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 중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은행연합회 및 은행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한시적 온 	_	-	4
---	---	---	---

- □ 금융위원회는 '20.4.16일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6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 o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2020년 9월 30일까지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고 결정 하였으며
- o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2020년 9월 30일까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고 결정하였음

2.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 □ 금융위·금갑원은 '21.6월 30일까지 5%p 이내의 예대을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 o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21.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5%p 이내의 예대율 위반은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제3항에서 규정한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3.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

□ 정부는 지난 '20.3.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만기연장 · 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 원칙

- □ 금번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책은 모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고 개별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절에서,금번 조치에 따라 상환유예된 대출 차주의 채무변제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리금이 감면되거나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그러므로,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치에 따른 원리금 상환유예는 채권 재조정여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범표3] 3.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 □ 은행은 금번 대책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충당금 추정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시에도 상기 관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예) 기준 정상 분류여신은 계속 정상으로 분류
- 4. 한시적 조치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 금융위·금갑원은 LCR, 예대율 등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 전에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 ㅇ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시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
- ㅇ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 ※ 별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

<보험사 RP 매도를 통해 채안·증안편드 출자자금 조달 허용> (대외송부, 2020.04.20.)

제목 보험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관련 질의 회신

- 1. 손해보험협회 손보협경 980-22호 (2020.4.20.) 관련입니다.
- 2. 보험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또는 자금관리상 편의를 위한 차입은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일반적인 펀드출자 · 자산매입을 위한 차입은 유동성 목적 보다는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레버리지 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
- □ 다만, 채안증안펀드는 보험회사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출자를 약정하여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로, 자산운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 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 출자 금융 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가 긴급하게 채안·중안펀드에 출자해 평상시 유동성 수준 유지를 위하여 PP매도가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의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원화예대율 5%p 한시적 적용유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 원칙> (대외송부, 2020,05,04.)

제목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관련 안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불임 1> 참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 완화 (외은지점 제외)
- □ 금융위원회는 '20.4.16일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6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 o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2020년 9월 30일까지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라고 결정하였으며
 - o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2020년 9월 30일까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라고 결정하였음
- 2. 원화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 □ 금융위·금감원은 '21.6.30일까지 5%p 이내의 원화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붙임 2> 원화예대율 비조치 의견서 참조)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21.6.30일까지 코르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5%p
 이내의 예대율 위반은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제3항에서 규정한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3.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
- □ 정부는 지난 '20.3.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만기연장 - 상환유에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 원칙

- 급변 원리금 상환유에 대책은 모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고 개별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번 조치에 따라 상환유예된 대출 차주의 채무면제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리금이 감면되거나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그러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치에 따른 원리금 상환유예는 채권재조정여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3. 채권제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 □ 은행은 금번 대책에 따라 월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충당금 추정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사에도 상기 관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예) 기존 정상 분류여신은 계속 정상으로 분류
- 4. 경영공시·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에 대한 면책 관련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영공시·업무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갑원에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공시·보고시 면책
 - ①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의 영향으로 해당 금융회사 본사 또는 대체사무공간(사업장)이 폐쇄되어 기한내 해당 사무 이행이 불가한 경우
 - (ž) 해당사무 담당 직원(대체직원 포함) 코로나19 확진, 숲 임직원의 격리조치 등으로 기한 내 해당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외국 본점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따라 사무공간(사무실)이 폐쇄되거나, 순환재택근무 실시·원격근무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기한내 해당 사무 이행이 불가한 경우
 - ②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을 위한 갑사인 시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갑사인이 외부갑사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경영공시限)
 - ⑤ 기타 ①~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5. 한시적 조치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 금융위·금감원은 LCR, 원화예대율 등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 전에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 ㅇ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시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
- o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 <붙임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 1부.
- <붙임 2> 원화예대율 비조치 의견서 1부, 끝,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 원칙> (보험업권, 20.05.04)

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안내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4.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 연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위 방안 중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생명보험 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정부는 지난 '20.3.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갑독원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 원칙

- □ 금번 만기연장·상환유에 대책은 모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고 개별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번 조치에 따라 상환유에된 대출 차주의 채무변제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리금이 감면되거나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그러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치에 따른 원리금 상환유예는 채권 재조정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3] 3. 채권재조정대출의 건전설 분류
- □ 보험회사는 금번 대책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 전성 분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충당금 추정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에 대한 이 자수익 인식 시에도 상기 관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예) 기준 정상 분류이십은 계속 정상으로 분류

불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 1부. 끝.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 원칙> (상호저축은행업권, 20.04.29)

제목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관련 안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4.2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 중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저축은행중앙회 및 저축은행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정부는 지난 '20.3.19.(목) 및 '20.4.8.(수)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인식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 독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원금 상환유예 등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 원칙

-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및 개인채무자"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금번 원금 상환유예 등은 개별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를 전제하지 않으며, 동 지원으로 원리금이 감면되거나 해당 채권의 현저한 가치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4.1. 발표한 「원급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대상
 ** 4.28. 보도자료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급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에 따른 지원대상
- □ 그러므로 금융위원회는 금번 조치에 따른 원금 상환유예 등이 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하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 저축은행감독규정 별표7
- □ 금융회사는 금번 대책에 따라 원금 상환유예 등이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충당금 추정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시에도 상기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예) 기존 정상 분류여신은 계속 정상으로 분류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 원칙> (여신전문급융업권, 20.04.29)

제목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관련 안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4.2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 중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여신금융협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지난 '20,3.19.(목) 및 '20,4.8.(수)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인식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 감독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u>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원금 상환유에 등 대출의</u>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 원칙

-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및 개인채무자''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금번 원금 상환유에 등은 개별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를 전제하지 않으며, 동 지원으로 원리금이 갑면되거나 해당 채권의 현저한 가치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4.1. 발표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대상 ** 4.28. 보도자료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에 따른 지원대상
- □ 그러므로 금융위원회는 금번 조치에 따른 원금 상환유에 등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하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
- □ 금융회사는 금번 대책에 따라 원금 상환유에 등이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충당금 추정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시에도 상기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예) 기존 정상 분류여신은 계속 정상으로 분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 원칙> (상호금융업권, 20.04.29)

제목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관련 안내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정부는 지난 '20.3.19.(목)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 하였습니다.
- 3. 이에 동 대책이 적용되는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상호금융 조한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연장 사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 원칙

- 이번 원리금 상환유에 대책은 모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고 개별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따라 상환유에된 대출 차주의 채무변제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단정할수 없으며, 원리금이 갑면되거나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 □ 그러므로,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에 따른 원리금 상환유예는 채무재조정 여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 금융회사는 금번 대책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대출에 대해 기존 자 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충당금 추정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시에도 상기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

불입 1. (별첨)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